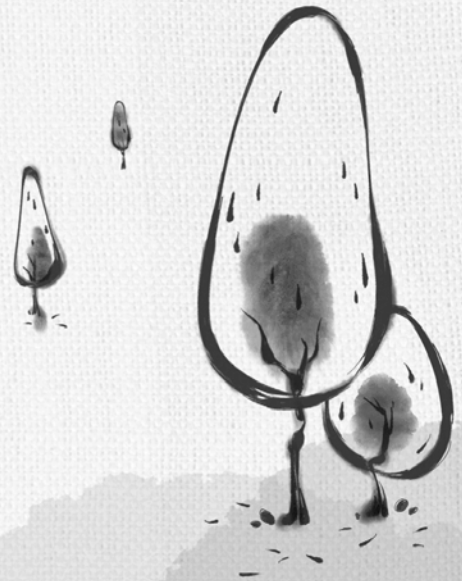


2012 연구자료집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범적용 결과분석 및 시사점

2012 Global Leader KRILA



연구진

이 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제1장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현황 .. 1

제1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3

제2절 성인지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의미 .. 7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출현 및 확산과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도입 7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에 주는 의미 9

제3절 2013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

검토와 과제 12

1. 법적 근거와 작성 절차 12

2. 지방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14

3. 지방 성인지 예산서의 체계와 주요 내용 17

4. 문제점 및 한계 19

제2장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주요 쟁점 23

제1절 지방 성인지 예산반영 사례 및 성평등지수 ... 25

1.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성인지 예산 25

2. 성별영향평가 후 성인지 예산 반영 사례 26

3. 국가 성평등 지수 27

제2절 성별수혜분석과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 29

1. 예산부서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29

2. 실·국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30

3.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31



제3절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38
1.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38
2.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39
제3장 지방 성인지 예산의 시범적용 결과분석	41
제1절 전라북도 사례	43
1. 개요 : 총평	43
2. 전라북도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45
제2절 전주시 사례	57
1. 개요 : 총평	57
2. 전주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60
제3절 완주군 사례	71
1. 개요 : 총평	71
2. 완주군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73
제4장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최근 동향	89
제1절 개요	91
제2절 성인지 예산의 국제적인 동향	97
1. 성인지 예산의 태동	97
2. 국제회의에서 성인지 예산분석의 주목	99
제3절 성인지 예산의 사례	104
1.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104
2. 스페인	104





3. 아이슬란드	108
4. 대만	111
5. 필리핀	112
6. 스웨덴	115
제4절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사점	121
제5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23
제1절 종합	12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7
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합리적 선정	127
2.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편성방향 설정	129
3.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성별수혜와 성별격차 원인의 분석	130
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132
5. 교육, 연찬, 홍보 등	133
〈참고문헌〉	135
〈참고자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	139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1-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제출 과정	13
<표 1-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15
<표 1-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16
<표 1-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주요 작성항목	18
<표 2-1> 여성과 남성의 대학진학률	28
<표 2-2> 문화콘텐츠 인력의 성별 현황 예시	34
<표 2-3>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의 사업별 성별 수혜자 현황 예시	34
<표 2-4>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의 사업별 성별 예산 수혜 현황 예시	35
<표 2-5>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예시	39
<표 3-1> 전북도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총괄표	47
<표 3-2> 전주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60
<표 3-3> 전주시의 각 국, 직속기관, 구청별 성평등 목표	61
<표 3-4> 전주시의 조직별 성인지 예산서 총괄표	62
<표 3-5> 완주군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수와 예산규모	71
<표 3-6> 완주군의 사업별 성인지 예산내역	72
<표 3-7> 완주군의 부서별 성평등 목표 및 성인지 예산편성방향	73
<표 4-1> 성인지 예산 실시 국가	92
<표 4-2> 성인지 예산 관련 국제연합 회의 및 국제회의	100
<표 4-3> 스페인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G+ scale	108
<표 4-4> 필리핀의 PPGD 전략, 목적, 비전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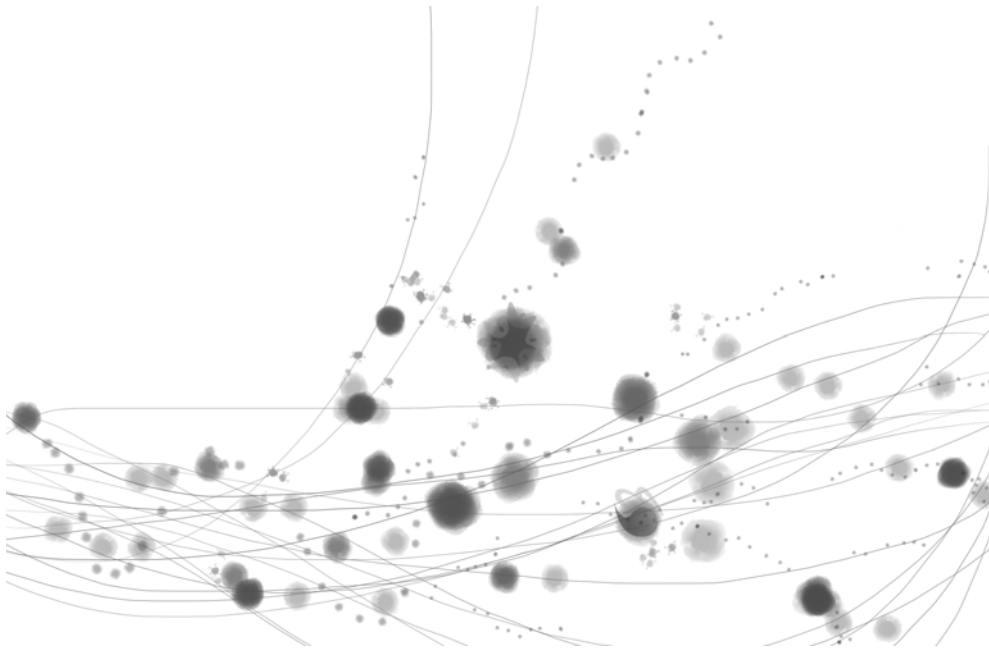
제 1 장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현황

제1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성인지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의미

제3절 2013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 검토와 과제



제 1 장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현황

제1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회계로 하여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나 단순한 자금이동에 해당하는 재무활동 및 예비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평등 목표(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곤란
-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류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는 예산보고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

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예산기제로서 예산서 부속서류로서의 위상을 지님

-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세계적 경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시스템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새로운 기법과 내용을 접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무관심해 왔던 예산의 남·여성 간 차등적 영향(효과)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예산의 편성·집행 등 전체 예산과정에 걸쳐 "젠더 형평성(gender equality)"을 구현하고자 제도화한 것은 사회 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문제는 이와 같이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충실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임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관리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변수’의 특성을 인식하고, 양성 평등의 관점을 예산에 투영시키는 새로운 예산운영방식임
 - 성인지 예산은 특정 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나 여성문제의 해소를 위한 예산분석수단이 아니고, 모든 재정활동을 대상으로 그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함축하는 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예산기법임
 - 이는 전통적 예산제도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남·여성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요인들(재정수요, 상황, 조건, 특성, 예산집행 영향)을 전연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남
- 전통적인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과정에서 가구, 소득 수준(소득재분배 차원), 지역낙후도(균형발전 차원), 인구특성(아동·청소년·노인·여성, 교육수준 등), 사회정의(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장애 여부 등), 지리적 특성(산악지역, 설해지역 등) 등 인문·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중요하게 다루어

- 온 반면 남성과 여성을 대비하는 ‘성 변수’는 고려대상에서 배제해 왔음
- 전통적 예산제도와 달리 성인지 예산은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변수로서 성 변수와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함
 - 성인지 예산은 전통적 예산이 예산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도외시하였던 남성과 여성 변수를 예산운영의 핵심변수로 간주한다는 점과 성별 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 영역을 인정받게 되었음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 결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게 되었는지(또는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예산기법 내지 방법론으로 정의됨(Budlender and Hewitt, 2002, 2003)
 -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이 처한 상황과 필요 그리고 예산배분의 영향 및 수혜와 관련된 내용을 수치로서 표현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소위 “좋은 예산수립(good budgeting)”의 중요한 기법으로 간주됨
 -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결코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지 않다는 가정 내지 인식 하에 가능한 모든 예산 대상을 양성(불)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이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수요와 특성 및 여건 차이를 공평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뜻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은 사회적 형평,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형성되어야 하는 사회적 형평문제를 정부가 관장하는 예산운영시스템 속에 투입시켜 정치·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

될 수 있음

-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는 예산 수치(재정수입 및 지출사업 금액) 중 상당수가 남성과 여성의 재정혜택 균등화라는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기 시작함을 의미함
- 성인지 예산은 비록 그 영역이 제한적이지만, 정부의 예산운영 관점과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사용하는 의사결정방식에 큰 변화를 가하는 힘을 지님
 - 이는 정부의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경제적 혜택에 영향을 미침
-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성인지 예산이 여성중심 예산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도 해당함), 그 후 성인지 예산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차츰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예산부문에 실행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감
- 성 주류화란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 정책개발, 연구, 주창, 소통과 대화, 입법, 자원배분, 계획, 프로그램 시행 및 모니터링에 대해 양성 평등적 시각과 인식을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Sarraf, 2003)
 -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공공부문 주체가 예산 및 비 예산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무차별, 동등 상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함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성인지 예산이 성 주류화를 구현하기보다 여성의 예산혜택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예산 운영이 남성과 여성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남성 위주의 예산을 운영해 온데 대한 교정과정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새로운 예산시스템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에 작동된다는 것은 예산지출의 영향이 남녀 간에 차별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의 공공부문에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형평”이 또 다른 지평에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제2절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의미¹⁾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출현 및 확산과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도입

- 예산이 막대한 재정자원에 힘 입어 정부의 정책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유력한 제도이자 국(주)민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자원배분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공공부문의 운영방식과 예산의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함
- 성인지 예산제도는 호주를 효시로(1984년 “women's budget” 수립)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인도,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북구를 포함한 유럽 지역, 미국, 멕시코, 페루를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등 전 세계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음
 - 초기에는 동 제도가 소수의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1995년 중국 베이징 개최)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1) 이 부분은 임성일의 글(“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에 주는 의미와 과제”, 2012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등)을 직접 인용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유엔여성기금(UNIFEM) 회의(2001년 브뤼셀 개최)에서 EU와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는 세계적인 예산제도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음

- 오늘날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전 세계 약 100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함
 -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이 예산편성의 관점과 관리 방식을 종래와 다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부예산제도에 양성평등 변수를 필수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이 되었음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여성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에 힘입어 2006년에 성인지 예산을 국가예산제도의 일부로 채택하는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를 이루어 내었음
 - 그 후 2010회계연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음
 -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방의 법정 예산제도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음
- 2012년 11월 말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2013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였고, 그 속에는 사상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첨부되었음
 -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2013년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2011. 3. 8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 2011. 9. 6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실천된 것임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처음 시도해 보는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 매우 어려워하고 적지 않은 애로를 경험하였음
- 중앙정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제출 조항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입법 예고한 후,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2010년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와 한계를 내포함
 -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제도는 금년으로 도입 3년 차를 맞이하였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하면 네 번째 성인지 예산편성), 성인지 예산편성의 내역과 수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인식 및 역량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 초기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경우 제도와 실체가 겹돌고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이와 같이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제도적 진보를 의미하는 동시에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준비해야 함을 의미함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에 주는 의미

-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시스템에 접목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첫째, 국(주)민에 대한 세금 부과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재정 형평성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확장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2012년도 예산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전체 재정의 43%를 사용하는데

비해 지방재정은 57%(일반지방재정 42%, 교육지방재정 15%)를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때,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도입은 성별 재정혜택의 불공평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파이(pie)와 사업의 대상과 공간적 범위를 명실상부하게 국가 전체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둘째, 중앙재정에 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는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의미를 지님

- 외국의 경우 성인지 예산대상이 교육, 노동, 경제 활동,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기능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 성인지 예산의 도입은 국가 성인지 예산에 비해 보다 동태적이고 주민 밀착적인 예산 운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셋째,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사업의 중앙·지방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상당수는 지방단위에서 자금이 지출되고(매칭 자금 부담) 사업이 실시되는 국고보조사업에 속함
- 따라서 앞으로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시되면 국고보조 성인지 예산사업들에 대하여는 개별 자치단체 차원과 전국 차원에서 성별영향 분석을 병행 실시하는 등 한 단계 발전된 예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넷째, 지방 성인지 예산의 실시는 중앙·지방간 재정이전의 운영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그것은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양성(불)평등의 의미와 영

향을 내포하는 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임

- 이 때 선정되는 성인지 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식(매칭 방식과 비율, 성과관리 등)을 국가와 지방이 협의, 확정해야 함
 -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교부세의 운영방식도 일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방교부세의 배분과정에서 기존의 인구수, 인구특성 변수 외에 남성과 여성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다섯째,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지방재정제도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이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기본특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의 속성에서 비롯됨
 - 비록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학습하겠지만(예컨대,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실천수단, 운영주체, 운영방식, 성공 및 실패요인, 시행착오, 갈등 및 장애요인 등), 일정한 기반이 형성된 이후에는 선도 자치단체가 탄생해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경우 성인지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지방간에 경쟁 및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여섯째,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난 해(2011년 9월)에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예산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들 두 제도는 비록 도입목적은 다르나, 재정운영의 참여, 책임성, 투명성 제고라는 공통된 지향가치를 갖기 때문에 양자의 연계성 강화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예를 들어, 지역의 현안과 수요에 정통한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가

예산편성에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이 양성평등의 요인을 함축하는지를 점검해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현안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도를 해줄 경우 두 제도는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상호 상승효과를 유발함

- 일곱째, 중장기적으로 지방 성인지 예산은 지출부문 외에 지방세와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방식 등(부과대상, 부과방법, 정책효과)에도 성관점을 투입하여 현재와 다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이는 성인지 예산이 지방재정의 수입을 확보하고 조달하는 방식과 내용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제3절 2013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검토와 과제

1. 법적 근거와 작성 절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조항: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제53조의 2, <부칙> 제2조, 시행령 제40조의 2, 시행령 제63조의2, <부칙> 제3조 등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법적 취지를 충족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생성하기 위해 2012년에 지방 성인지 예산서의 양식과 체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지난 7월 말에 각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지방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하였지만,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확정되었음

<표 1-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제출 과정

시기	추진내용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협의) - 「'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배포(『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 ➢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개별 사업부서)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성인지 예산서 제출·취합 (해당 실·국 → 예산부서) - 해당 실·국은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검토 및 확정 (예산부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지방의회 제출 - '1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 의회 제출

자료: 행정안전부

-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작성기준을 토대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함
 - 이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 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의 예산부서와 다른 부서들 간에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예산부서와 여성부서의 역할이 중요함

- 금번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는 사실상 모든 부서와 대부분의 예산 사업을 성인지 예산 검토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책의지가 표명되었는데,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자치단체 내의 전체 부서간 협의와 조정이 매우 중요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서간 협의와 조정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간파되고 있음
- 이 때 만일 전 부서 간에 성인지 예산편성에 관한 협의와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는 사업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동시에 심사·확정한 다음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출 과정에 관한 내용이 <표 1-1>에 요약되어 있음

2. 지방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될 성인지 예산사업을 <표 1-2>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서는 성인지 예산사업을 크게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됨
 - 필수사업은 크게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고, 권장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국고보조사업 외)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됨

<표 1-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구분	대상사업	비고
필수 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 ◇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권장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 이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 ◇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자료: 행정안전부

- 만일 자치단체의 자발적 추진사업을 제외하면,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 성인지 예산사업의 선정기준 또한 튼튼한 원리나 원칙에 입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성인지 예산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문제임
 -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게 되는 재정지출사업들 가운데서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임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 모두 보다 확고한 원리나 원칙에 입각해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하기보다 제도 중심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한계와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음

-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튼튼한 원리나 지향가치, 논리적 일관성에 근거하기보다 기존 제도에 초점을 두고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음
-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는 지방 성인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달리 대상사업 기준을 원리·원칙 지향적이면서 실용성을 겸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 주류화의 실천 차원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확대 적용하려면 현재와 같은 전년도 답습식 제도 활용방식은 지양하고, 객관적인 선정 원리를 고안하고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접근을 해야만 함

<표 1-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정책사업 • 성별영향 분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 계획 추진사업 •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 계획 추진사업 •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 계획 추진사업 •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2012년 성별영향분석사업 중 예산사업은 필수 포함)
지방자치단체	없음	없음	없음	<필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 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권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국고보조 외 사업)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주: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행정안전부)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3. 지방 성인지 예산서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지방의 성인지 예산서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세부적으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예를 들어, 지방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설명자료 속에 성별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중앙정부와 차별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간주됨
 - 여기에서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기본구조와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서는 크게 성 평등 목표, 사업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성 평등 목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하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해당부처의 개별사업을 총괄하는 성 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부처의 여건에 따라 1-3개 수준의 목표를 제시함)
 - 사업총괄표는 회계별로 사업의 목록과 예산액을 표로 제시하는 것으로 부처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예산정보와 총계 정보를 담고 있음
 - 사업별 설명자료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관한 주요 내역(사업명, 예산 금액, 정책대상, 사업내용, 성 평등 목표분야, 성 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함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기본 구조와 내용은 크게 (1)성 평등 목표, (2)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3)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4)실·국별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5)부서별 성인지 예산서(사업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로 구성됨

<표 1-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주요 작성항목

작성자	작성항목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	I. 성평등 목표
	II.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III.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1. 총괄표 2. 사업별 총괄표 3. 기능별 총괄표 4. 조직별 총괄표
실·국	IV.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1.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2. 총괄표 3. 사업별 총괄표
실·과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1.사업 총괄표 -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자료: 행정안전부

- 이러한 사항들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과 단위에서 작성되는 개별 성인지 예산사업과 관련된 내용(정보)임
 - 성인지 예산의 성공 여부가 개별 성인지 예산사업이 어떻게 잘 구조화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통계와 분석이 객관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해 주는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정보 유용성)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4. 문제점 및 한계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현재 제시된 작성기준이 안고 있는 문제와 개선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새로 도입되는 예산제도에 대해 중앙정부(특히,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준비 기간 측면에서나 작성기준(매뉴얼), 역량 강화, 교육·인식·홍보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
 - 그 결과 성인지 예산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지방의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편성 안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의 형식적 면모 등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음
- 둘째,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은 제도 도입의 초기부터 성인지 예산의 편성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대상은 모든 조직과 대부분의 사업을 망라하는데, 이는 형식논리 면에서는 합리성이 있을지 모르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을 크게 도외시하는 접근임
 - 현재와 같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방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미미하고, 역량, 교육, 지식, 정보, 통계 등 각종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과도한 정책적 의욕을 앞세울 경우 성인지 예산이 부실하게 편성될 가능성이 있음
 - 나아가 만일 이것이 잘못 인식되고 확대된다면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의 편성을 안이 하게 생각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다루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짐

- 셋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그것이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제시되기보다 제도 위주의 편의적 접근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점을 노정함
- 넷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의 편성대상 중 상당수가 여성과 관련된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성인지 예산이 자칫 ‘여성위주예산’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큼
 -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상사업의 선정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여성정책추진사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에 예상된 바임(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절대 다수도 여성 편중의 경향을 지니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해 줌
- 다섯째, 지방 성인지 예산 편성기준에 제시된 예시나 권고사항에 불완전성과 문제가 나타남
 - 예를 들면, 제시된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내용 중 일부는 원인분석이 기보다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낮은 질적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임
 - 그리고 원인분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통계나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 등에 기초하기보다 논설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이는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여섯째, 성 평등 목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이 구체적인 예산사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관계 설정이 불분명함
 - 예컨대, 제시된 성 평등 목표와 예산에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사업과는 연관성이 낮거나 너무 동떨어진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의 경우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성과목표 중 상당수가 적합성이 부족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구성되고 있음
- 일곱째,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암묵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사업 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인지 예산의 내실과 효과성 제고보다 형식과 외형에 치중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결과(성인지 예산사업의 수행 결과) 그것이 거시적으로 주민생활 및 양성평등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취약한데, 이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사업의 영향이 지나치게 큰 나머지 성인지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영역이 제한되는 문제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인지 예산의 발전을 가로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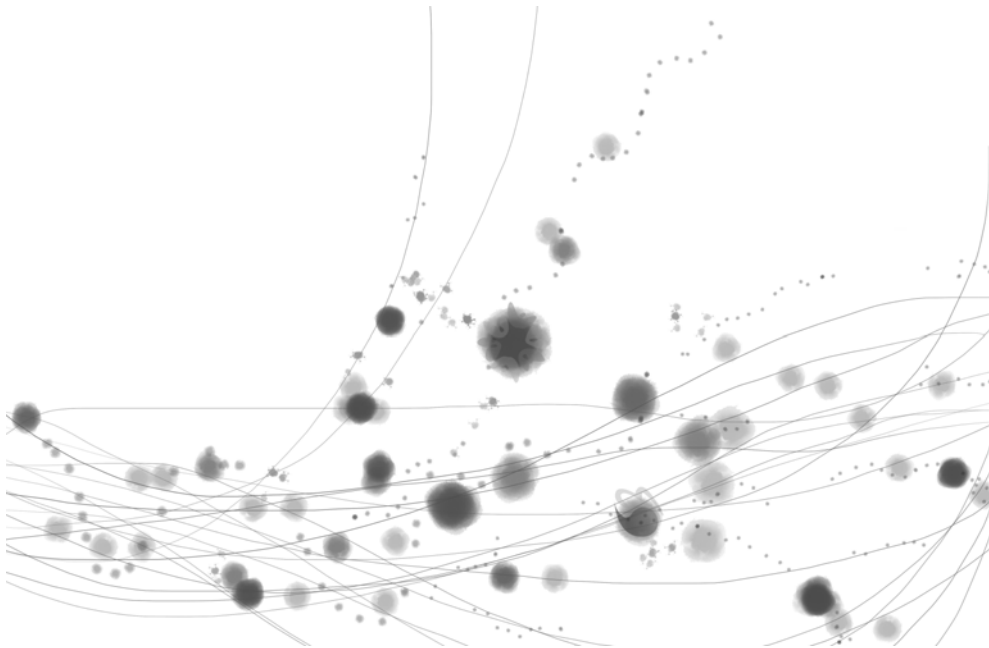
제 2 장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주요 쟁점

제1절 지방 성인지 예산반영 사례 및 성평등지수

제2절 성별수혜 분석과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제3절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제 2 장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주요 쟁점

제1절 지방 성인지 예산반영 사례 및 성평등지수

1.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효과)을 사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별로 예산수혜가 평등하도록 성평등 관점을 예산 기제 속에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 성인지 예산제도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이미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필요한가임
-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우선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경험이나 특성, 조건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 정책이나 지방정책의 추진은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낭비 등의 경제적 비효율, 국(주)민의 불편 및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양성의 차이를 고려한 시각에서 정부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 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기법을 의미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 구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할 제도일 것임

2. 성별영향평가 후 성인지 예산 반영 사례

-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하에서는 성별영향평가 후에 성인지 예산에 반영한 국내와 국외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의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기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고 있음 -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대체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경우가 많으나 남자독거 노인의 경우 오히려 노후에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복지회관 등의 여가시설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률 109.6명은 OECD 국가평균(60.4명)에 비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008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자료) 특히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자살률이 높았음 <p>※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십만명당 자살인원)</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연령</th> <th style="text-align: center;">남성</th> <th style="text-align: center;">여성</th> </tr> </thead> <tbody> <tr> <td>60~64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72.7</td> <td style="text-align: center;">22.6</td> </tr> <tr> <td>65~69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90.1</td> <td style="text-align: center;">29.0</td> </tr> <tr> <td>70~74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7</td> <td style="text-align: center;">40.4</td> </tr> <tr> <td>75~79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144.8</td> <td style="text-align: center;">61.4</td> </tr> <tr> <td>8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13.8</td> <td style="text-align: center;">92.7</td> </tr> </tbody> </table>	연령	남성	여성	60~64세	72.7	22.6	65~69세	90.1	29.0	70~74세	112.7	40.4	75~79세	144.8	61.4	80세 이상	213.8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마땅히 외로움을 해소연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특히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46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연령	남성	여성																	
60~64세	72.7	22.6																	
65~69세	90.1	29.0																	
70~74세	112.7	40.4																	
75~79세	144.8	61.4																	
80세 이상	213.8	92.7																	

- 다음은 해외사례로서 2004년도의 캐나다 보건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보건국은 당뇨병의 경우 여성은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에 증세가 가벼운 상태로 발견되지만, 남성은 중년 이후 증세가 심각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 - 이는 여성은 출산전후 검진을 통하여 당뇨병을 조기발견하게 되지만, 남성은 병세가 지각된 이후 검진함에 따라 합병증이 수반된 중증의 상태에서 당뇨병을 발견하기 때문이었는데, 이로 인해 여성은 식이요법이나 가벼운 약물치료로 증세가 호전되는 반면 남성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캐나다는 남성들도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기회를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에 따라 당뇨병의 조기치료와 함께 치료를 위한 국가예산도 줄일 수 있었음

3. 국가 성평등 지수

- 성평등은 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함(여성가족부)
- 성평등지수란 국가별로 성평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있음
- 성불평등지수(GII)는 UNDP가 2010년부터 각 국가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서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것임
 - 기존의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가 선진국·엘리트 위주로 구성

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표 선택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성 불평등지수(GII)가 새롭게 도입되었음

- 성불평등지수(GII)는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여성인구 비율을 측정하는 여성 권한(Empowerment) 부문,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을 측정하는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부문, 경제활동참가율을 측정하는 노동참여(Labour market) 부문으로 구성됨
 -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률, 여성의원 비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성불평등을 측정
- 성격차지수(GGI)는 WEF(세계경제포럼)에서 고용(경제참여와 기회), 교육(교육적 성취), 보건(건강과 생존), 정치(정치적 권한 부여) 등 4개 부문을 0점(불평등)에서 1점(평등)까지 평가하여 종합 점수화하여 측정됨
 - GGI는 해당 지표의 수준(level)이 아니라 남녀격차(gap)만 표시하고 있어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 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GGI를 구성하는 요소 중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경우 휴학생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군 입대로 인한 휴학생 수로 인해 남자 대학생이 과다 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에 일정 부분 왜곡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1> 여성과 남성의 대학진학률

성별	2009년	2010년
여성	82.4%	80.5%
남성	81.6%	77.6%

- 여성가족부는 국제적으로 비교·발표되는 성평등지수와 별도로 2009년에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음
 - 가족, 복지, 경제활동 등 8개 부문의 20개 지표를 통해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09년 61.8점, 2010년 62.6점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외국과의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여성가족부는 조사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과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범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제2절 성별수혜 분석과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

1. 예산부서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인지 예산 총괄표
 - 특정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총 규모와 대상사업 수를 총계 및 회계·기금별, 조직별, 기능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임
 - 성인지 예산 총괄표는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그리고 예산총괄표의 세 부문으로 구성됨
 - * 성인지 예산 총괄표는 성인지 예산과 비 성인지 예산을 대비하는 거시적 정보도 제공함
 - 총계, 회계·기금별로 성인지 예산 및 비 성인지 예산의 사업수와 예산금액, 예산의 비중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
- 성평등 목표(해당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성평등 목표 종합)
 -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3~4개 정도의 성평등 목표를 정의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함

- 중앙정부와의 제도·정책적 일치성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성평등 목표를 원용할 수 있음
- 현재 성평등 수준과 미래의 방향을 주요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
 - ※ 성평등 목표 - 정책사업 성인지 목표 - 세부사업 성인지 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 확보가 필요함

○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 해당 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을 계획·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의 기초,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중요한 정책변화와 역점사업, 그리고 이들이 종합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평등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기술함

○ 예산총괄표

- 예산총괄표는 현행 e-호조시스템의 입력·작성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예산정보를 생성함

2. 실·국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실·국별 성인지 예산 사업 총괄표

- 지방자치단체의 각 실·국별 성인지 예산 사업 총괄표는 어떤 성평등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과 사업으로 추진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집계한 표를 의미함
- 실·국의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과 사업총괄표로 구성됨

○ 성평등 목표

- 실·국의 성인지 예산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함
 - 실·국의 경우 과별로 성평등 예산 대상사업이 여러 개 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기재함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사업 코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재함

※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련 사항을 기재

○ 성인지 예산규모와 사업 총괄표

- 실·국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관한 예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집계표임

* 앞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총괄표」 기재사항을 참조

○ 대상 회계

- 대상사업의 회계 구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을 명시함
 -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을 기재하되, 예외적으로 단위사업 또는 개별사업을 기재할 수 있음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을 기재하고, 증감액 및 증감률을 제시함

○ 성평등 기대효과

- 성평등 기대효과는 해당 조직이 계획하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집행될 때 양성평등 증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
-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서술

3.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세부사업 설명서

- 각 성과소가 관장하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각각에 대한 핵심내용을

포괄하는 자료로 사업개요서에 해당함

- 사업명, 당해연도 예산, 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 사업주체), 기대효과 등 주요사항을 기재함
- 성인지 예산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별수혜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
- 성별수혜 분석은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다음 연도 성과목표를 점검하여 기재
- 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 객관적 증거(evidence), 주요 쟁점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거나 통계적 근거를 제시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사유

- 성별통계, 성별영향분석, 관련 문헌, 기타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여성과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여건, 서로 다른 재정수요, 수혜 영향 차이 등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여성과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situation) 및 여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기술
- 현실적으로 관측되고 드러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내용
- 현실적으로 관측되고 드러난 여성과 남성 간의 상이한 수요에 대한 내용
- 현실적으로 관측되고 드러난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영향에 대한 내용
- *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또는 남성) 고유의 특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술해야 함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 이유와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는 젠더 이슈와 관련된 원인분석이 결정적으로 중요함

○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사업

- 문화콘텐츠 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절반 수준에 다소 미달함
- 그러나 문화산업 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지위와 임금이 낮은 직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예컨대, 애니메이션 기획자의 경우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중은 33.3%, 프로듀서 중 여성의 비중은 5.0%에 불과함

-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수요(needs)의 차이를 반영하여 기술
 - (예시) 공중화장실 : 공공시설 화장실에서 유독 여성들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성들은 생리구조상 화장실 이용 시간(평균 79초)이 남성(45초)보다 길지만, 화장실 수는 똑같이 설치되었기 때문임(여성과 남성의 니즈(needs) 차이)
- 해당 사업이 현실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수혜 영향에 차이를 미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성별 수혜분석

- 대상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 또는 수혜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함
- 성별 수혜분석을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현황(수혜대상 모집단, 현재 처해 있는 상황·문제) 및 수요(needs)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 성별분리 통계가 구비되어야 함
 - 성인지 예산서가 실질적 의미와 유용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사업)의 대상자 및 수혜자에 대하여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해야 함

※ 성별분리 통계

- 성인지 예산이 일반예산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상황(situation)과 수요(needs), 그리고 수혜 및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불평등 요인을 교정해 주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점임

- 이 때 활용되는 중요한 인프라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구분하는 성별분리 통계이며, 성별분리 통계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해야 함

① 사업의 성별 현황

- 본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재 연도를 중심으로 직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 현황을 기재

<표 2-2> 문화콘텐츠 인력의 성별 현황 예시

(단위: 명, %)

구분	2007	2008	2009
합계	430,540(100.0)*	440,000(100.0)	455,000(100.0)
남	238,393(55.3)	242,000(55.0)	245,000(53.8)
여	192,147(44.7)	198,000(45.0)	210,000(46.2)

* 사업대상자 : 2007년 문화산업통계 기준

② 사업 수혜자 성별 현황

- <예시>와 같이 사업이 세분화되는 경우 세부 사업별로 현재의 성별 현황을 기재

<표 2-3>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의 사업별 성별 수혜자 현황 예시

구분	참여자 수(명, %)		합계(명, %)	
	여성	남성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과정	22(48.9)	23(51.1)	45(100.0)	
문화콘텐츠 연수과정	사범연수생	14(36.8)	24(63.2)	38(100.0)
	교사연수	78(97.5)	2(2.5)	80(100.0)
	행정연수	2(18.2)	9(81.8)	11(100.0)
	변호사연수	3(25.0)	9(75.0)	12(100.0)
	교수연수	3(13.0)	20(87.0)	23(100.0)
	현장인력(집중)	11(22.9)	37(77.1)	48(100.0)
	현장인력(워크샵)	23(44.2)	29(55.8)	52(100.0)
소계	134(50.8)	130(49.2)	264(100.0)	
문화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30(27.5)	79(72.5)	109(100.0)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과정	4(9.5)	38(90.5)	42(100.0)	
시작개척 에이전트과정*(국내파견)	12(30.8)	27(69.2)	39(100.0)	
전체	202(40.5)	297(59.5)	499(100.0)	

-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의 수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로 2007년도 모집단 44.7%에 근접함
- 그러나 과정별 참여자의 성비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여성은 문화콘텐츠 기획·창작과정, 문화콘텐츠 연수과정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글로벌 리더과정, 시장개척 에이전트 과정 등 관리자급 이상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비중이 낮음

③ 예산의 성별 수혜 현황

- 사업별로 현재 성별 예산 배정금액을 기재

<표 2-4>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의 사업별 성별 예산수혜 현황 예시

(단위: 천원, %)

구분	성별 수혜액		남성 대비 여성수혜비율 (A/B*100)	교육기간 1인당 1인 수혜액
	여성(A)	남성(B)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과정	342,300 (48.9)	357,700 (51.1)	95.7	155
문화콘텐츠 연수과정	279,400 (50.8)	270,600 (49.2)	103.2	2,083
문화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137,500 (27.5)	362,500 (72.5)	37.9	4,587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과정	33,250 (9.5)	316,750 (90.5)	10.5	8,333
시장개척에이전트 과정(아시아파견)	100,161 (30.8)	255,038 (69.2)	39.2	8,338
전체	892,611 (36.4)	1,562,588 (63.6)	57.1	4,920

- 여성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획·창작과정>, <문화콘텐츠 연수과정>의 1인당 1일 수혜액²⁾은 각각 155천원, 2,083천원인데 비해 남성이

2) 각 프로그램은 교육기간이 다양하므로 1인당 예산 총액을 교육기간으로 나누었음

많은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 <시장개척 에이전트> 과정은 각각 8,333천원, 8,338천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성별수혜격차 원인분석

- 사업의 본래 추진배경과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해당 사업이 성별수혜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
- 성별영향분석은 분명한 젠더 이슈(쟁점, 문제점 등)를 채택한 다음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둬
 -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젠더 이슈의 원인을 정확히 간파하는 것은 향후 해당사업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정책과 사업의 개선을 통해 양성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예) 왜 여성의 특정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가? 에 대해 정보 부족인가,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없거나 다른 접근가능성의 불이익에 기인하는가 등의 원인을 객관적 방법을 통해 파악함
-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을 종합하여 기술하되,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함

<작성 예시>

-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은 사업별로 성비율이 다른데, 이것은 교육과정의 성격에 의존함
- 문화콘텐츠 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절반에 조금 못미침
 - 그러나 문화산업 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지위와 임금이 낮은 직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 수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이나, 과정별 참여자의 성비는 크게 차이가 있음
 - 즉, 여성은 문화콘텐츠 기획·창작과정, 문화콘텐츠 연수과정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글로벌 리더과정, 시장개척 에이전트 과정 등 관리자급 이상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비중이 높음
- 따라서 관리자급 교육프로그램의 여성수혜비율이 특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전략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시장개척 에이전트 과정'의 예산을 증액
- 글로벌 리더과정 사업계획 수립 시 여성비율을 할당하고, 대상자 모집공고 시 이를 명시

○ 예산 및 사업 반영

- 앞서 기술한 성별수혜격차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상사업이 성별수혜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 예산액(성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을 기술

<예시>

- 관리자급 교육프로그램의 여성수혜비율이 특히 낮은 점을 고려
 - 전략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시장개척 에이전트 과정'의 예산을 100백만원 증액 반영함

○ 성평등 기대효과

- 해당 사업이 예산계획대로 충실히 집행·관리되었을 때, 기대되는 양성평등 증진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모든 성인지 예산사업을 포괄하는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일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핵심 주도사업의 기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

* 기대효과는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서술함

제3절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1.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 해당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동 사업의 실시를 통해 성취(달성)하고자 하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1년 단기목표 중심)
 - 성별 수혜현황 분석 후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과목표 설정 및 근거를 기재
 - 설정된 중·장기적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는 성과목표 기술
- 이때 해당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무부서가 성취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관련 목표 내지 결과(목적, 목표, 성과, 결과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예)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혜택 : 수와 비율, 분포, 기술·지식 증가, 만족도 증가, 접근성 증가 등에 관한 지표
- 성과목표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현실가능성 등 성과지표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구체성, 객관성(측정 및 평가 가능성), 정보이용 가능성(통계·정보입수 가능성), 현실성, 적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성과목표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년도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와 연계성을 갖는 단년도 목표로 구조화 할 수 있음
 - 성과목표는 가능한 단일의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특성 상 복수의 성과목표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장 의미가 크고 중요한 대표적인 목표를 채택함

2.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실적 및 목표치를 제시함
 - 성인지 대상사업의 산출물 지표는 예산의 편성·집행 결과 나타나는 직접적 산출물(output)을 의미함
 - 산출물 지표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객관성 담보를 전제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함
- 양적 지표: 수(예: 참여자 수, 수혜자 수 등), 빈도(참여 빈도, 수혜 빈도), 비율, 비중, 분위(예: 하위 10% percentile 등)
- 질적 지표: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비계량적 판단기준으로 사회적 합리성·공감대 기준에 입각하여 설정함
 - 예) 사회적으로 인정된 특정 조건의 충족도, 만족도, 질적 평가 내지 견해 등
 - 예) 여성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편성된 다음 여성들이 만족하였는지를 측정 (질적 지표). 반면에 여성의 화장실 대기시간 측정은 양적 지표임

<표 2-5>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예시

구분	2012 성평등 목표	설정 사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여성 비율 30%	현재 27%를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글로벌 리더과정 여성 비율 7%	현재 4%를 상향 조정
	시장개척 에이전트 과정 여성 비율 33%	현재 30%를 상향 조정

성과목표	2012년 실적	2013년	2014년
관리자급 교육프로그램의 여성비율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성별 비율		
	글로벌 리더과정 이용자만족도		
	시장개척 에이전트 과정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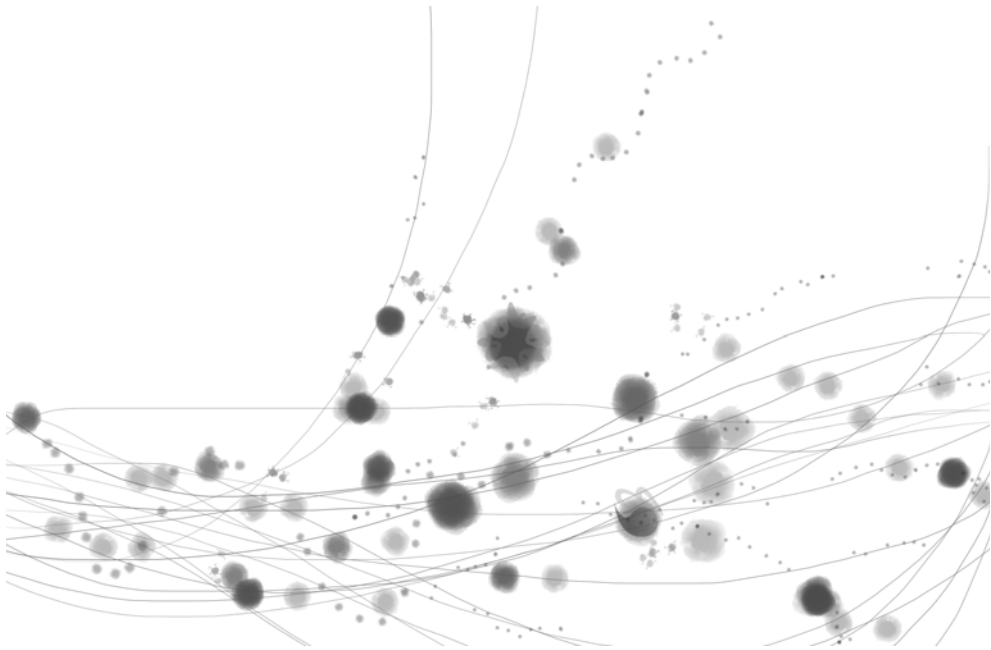
제 3 장

지방 성인지 예산의 시범적용 결과분석

제1절 전라북도 사례

제2절 전주시 사례

제3절 완주군 사례



제 3 장

지방 성인지 예산의 시범적용
결과분석

제1절 전라북도 사례

1. 개요 : 총평

-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본청) 또한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도정 사상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아 금번의 성인지 예산(안)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본질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젠더(gender) 즉, 남성과 여성이 갖게 되는 예산평등권에 대한 초보적 인식과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져야 할 것임
 - － 자치단체장, 관계부서, 지방공무원 등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변화나 교육 및 홍보 과정이 충실히 뒷받침된 예산편성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 대상사업 선정,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별수혜분석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유용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사항(조건)들이 제대로 분석·설명되거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두고 중앙정부(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가 업무적,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북도는 실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문제를 겪은 것으로 추측됨

- 준비 기간, 작성 매뉴얼, 역량 강화, 교육·인식·홍보 측면의 부족성이 노정됨
- 성인지 예산 부적합 사업 선정, 일정 예산비율 확보 등 제도 운영의 형식적 면모가 발견됨
- 객관적인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시도하는 사업들이 많아 성인지 예산이 자칫 ‘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를 제공함
 - * 이는 국가 성인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편성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명시적, 목적으로 여성관련 예산사업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전북)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 제도 도입의 초기부터 성인지 예산의 편성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하려는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어서 자칫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성인지 예산의 대상을 대부분의 조직과 사업을 망라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각 부서들이 형식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를 유발하고 있음
 - * 성인지 예산에 대한 도청 공무원의 인식과 교육·홍보·역량이 미미하고 성별격차 원인 분석, 수혜자 분석,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접근은 성인지 예산의 부실 편성 가능성을 초래함
 - * 초기단계에서 엄격히 인식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는 소위 “종이작업(paper work)”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음
-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그것이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제시되기보다 제도 위주의 편의적 접근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점을 노정함
 - 이는 전북의 문제이기에 앞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선정기준이 실무적으로 분명하지 않은데 기인함
 -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첫 단추는 성인지 예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면서 지역단위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북도는 이 문제에 대해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함

* 이는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해 줌

- 전북에서 편성한 성인지 예산사업 중 상당수가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다루는데 있어서 객관적 논거, 통계, 분석 등에 기초한 내용을 수록하기보다 단순한 필요성이나 현황을 기술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공무원의 단편적·주관적 의견을 표현하는 문제를 드러냄(낮은 질적 수준 문제)
- 성 평등 목표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예산사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관계 설정이 불분명함
 - 예를 들어, 제시된 성 평등 목표와 예산에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사업과는 연관성이 낮거나 너무 동떨어진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많이 발견됨
- 성평등 기대효과의 경우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성과 목표 중 상당수가 불명확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구성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예산편성의 공신력과 향후 추진 방향에 혼돈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2. 전라북도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가. 성평등 목표(도 전체)

- 성평등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전국적 목표(중앙정부 제시 성평등 목표)와 전북의 여건 및 환경을 상호 연계·반영하는 노력과 창의성이 다소 부족함
- 제시된 성평등 목표가 지나치게 여성 위주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전북의 성인지 예산이 진정한 “gender equality”를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2012년도 전북도의 성평등 목표>

-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및 여성 취업영역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여성전문인력 양성,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등
- 여성의 권익보호
 - 대상별 복지 충족 및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각종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강화
 -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나. 2012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도 전체)

- 성평등 목표와 비슷하게 여성 편향적 경향이 관측됨
-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의 설정(구체적 근거 제시) 등을 통한 예산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예산편성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실제 내용은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음(형식적 선언)
- 성인지 예산의 편성방향을 전북도 전체의 예산편성기조와 연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

<2012년도 전북도의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 취약계층 민생안정,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하여 예산편성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 성인지 정책의 실현과 평등문화 확산,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등 지원

다. 2012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별, 기능별 구성

- 사업별 총괄표는 회계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성인지 예산사업의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총 43개 사업, 104,47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만 구성됨
-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3개(55,206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개(35,404백만원), 기타 사업 21개(13,860백만원)임

<표 3-1> 전북도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43	104,470	101,420	3,050	3.01	
여성정책기 본계획사업	소계	3	55,206	52,051	3,155	6.06
	일반회계	3	55,206	52,051	3,155	6.0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 석평가사업	소계	19	35,404	38,766	△3,362	△8.67
	일반회계	19	35,404	38,766	△3,362	△8.6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타	소계	21	13,860	10,603	3,257	30.72
	일반회계	21	13,860	10,603	3,257	30.7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주 :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능별 총괄표에 의하면, 사회복지(080) 분야에 전체 예산의 71.7%(7개 사업)가 집중되며, 그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6.8%(7개 사업), 농림해양수산 4.9%(13개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보아 중앙정부 및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나는 사업 구성이지만, 거시적으로 크게 경향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님
 - 부서조직별로 살펴보면, 국 단위에서는 복지여성보건국이 전체 성인지 예산의 71.4%, 과 단위에서는 여성청소년과가 전체 성인지 예산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분야에 성인지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 초기 성인지 예산편성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북의 성인지 예산이 지나치게 여성위주의 예산사업에 편중되는 현상이 관측됨

라. 부서별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부서별로 제시된 성평등 목표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부서에서는 성평등 목표로 간주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실/국/과에서 제시하는 성평등 목표 중 대다수가 모호하거나 부적합(성인지 예산 목표와 거의 무관함)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성평등 목표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례

<교육법무과>

-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를 제공
-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맞춤 인재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전북 인재육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도민 참여의식 조성
- 제도적인 기반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인재육성 연계

<관광산업과>

- 도내 문화유적 및 관광지에 배치하여 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과 안내로 다시 가고 싶은 전북관광 이미지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

<농업기술원(자원개발국)>

-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통한 연구지도사업 역량 강화
- 개방화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식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
-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경영진단, 처방, 개선 등 기술경영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 농업농촌의 신활력화를 위해 비용절감, 품질향상, 마케팅, 경영시스템 개선 등 프로세스를 개선할 선도 농업경영주체

■ 성평등 목표가 모호한 사례

<건설교통국>

- SOC 확충과 대중교통시설 개선으로 취약계층 및 여성의 편의 증진

<도로공항공과>

- 보행 위주의 이동생활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성별간 차별성 최소화
(* 취약계층을 여성과 직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임)

■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미미한 목표를 제시한 사례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위원수 7명

- 현행 : 여성 0명, 목표 : 여성 2명

* gender equality의 접근은 맞지만, 체육진흥과가 수행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평등 목표로 간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함

- 그 외에도 일일이 지적하지 않지만, 극소수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인지 예산과 연계되는 성평등 목표를 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이해를 갖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임
- 부서별로 제시된 2012년도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성인지 예산의 편성방향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견되었음
- 성인지 예산의 기초와 무관한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사례
 - 체육진흥과
 - 읍면동 단위까지 전문체육인 지도활동을 위한 인건비 편성
 - 폭넓은 지도활동을 위해 출장비를 실비로 책정, 경비부담 해소
 - 도로공항공과
 -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

- 주민환경,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
- 기타 여성위주/편중적 경향이 강한 성평등 목표를 제시한 사례 다수
- 성인지 예산기조와 본 예산편성 기조와의 연계/조화 부족 등

마.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 성별격차 원인분석 : 문제와 개선 필요성

- 전북도의 성인지 예산편성안에서 제시하는 성인지 예산사업의 개요를 살펴볼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상사업의 선정문제와 성별격차 원인분석 미흡을 지적할 수 있음
 - 성인지 예산 부적격 사업의 선정(*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문제가 있음)
 - 객관적 논거와 통계 등에 기반을 두지 않은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대한 기술; 형식적이고 안이한 성별격차 원인분석 기술 등

(1)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

- 성인지 예산사업을 무리하게 선정한 내용과 사례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원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대상(모집단)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양성을 평등화시키려는 시도
 - * 성별 진입장애, 선호 문제 등이 전연 개입되지 않은 자연적 현상에 대해 무리하게 여성의 비율/수혜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사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객관적인 원리/원칙과 왜 특정 사업이 지역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논거, 통계, 사회적 함의 등이 없이 현상을 기술, 나열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 성인지 예산대상 부적합 사업 예시

- 제시된 인력양성 관련 사업의 일부(실제로 사회구조상 특정 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성 불평등(재정혜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예) 태양광 소재 제조 기초인력 양성사업, 풍력터빈 및 해상구조물 인력양성사업, 보육시설 복지향상 등 다수
-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존 공무원 구성의 구조 문제) 등

(2)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경우 통계, 논리, 학술적·실무적 결과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단편적 시각이나 현상을 한, 두 줄로 정리하는 무리한 문제가 발생함
 - 소수 사업의 경우 성별원인 격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여 원인분석을 체계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사업들은 성별원인 격차분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상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잘된 사례
 - 국가 예방접종 실시: “남자와 여자의 예방접종 대상자 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 16세 이상부터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여자의 예방접종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완전히 무관한 내용을 기술한 사례
 - 보육시설 복지향상 : “여성 유효인력 활용”
 -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 “소상공인, 창업희망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생활정보지, 현수막,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참가를 홍보하고 있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 시 불편 예상” 등 다수

- 성별격차의 현상을 설명할 뿐 원인분석과는 무관한 기술 사례
 -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 “사업수혜자가 정보화 취약계층으로 신청자 비율이 여성이 조금 높은 편임”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 “여성 해외연주자 비율은 평균 58.3%로 남성(47.1%)에 비해 높은 편임; 매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비율 중 여성수혜 비율이 높아가고 있음”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추진 실적에 의한 사업배정으로 남녀 구분이 평등 지원”
 - 노인 일자리사업(지원)
 - “여성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비율은 61%로 대상자 성비에 비하여 높은 편임”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종사업종의 차이”
 -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코디네이터 지원
 - “사업의 성격이 정적인 업무의 비중이 높아 여성의 치밀함이 요구되는 사업임” 외 다수

바. 기타

- 대다수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별 수혜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불충분하고, 성평등 기대효과가 추상적이거나 사업과 조직의 성평등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움

* 다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미래 상 내지 정책 지향을 토대로 젠더 비중과 수혜를 조정하는 접근은 합리적인 접근

〈참고자료〉

○ 전북도의 기능별 총괄표(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능 별 】

(단위: 개, 백만원, %)

분 야 · 부 문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43 (43)	104,470	100.00	101,420	100.00	3,050	3.01
010 일반공공행정	7 (7)	7,081	6.78	6,146	6.06	934	15.20
016 일반행정	7 (7)	7,081	6.78	6,146	6.06	934	15.20
020 공공질서및안전	1 (1)	458	0.44	411	0.41	47	11.33
025 재난방재·민방위	1 (1)	458	0.44	411	0.41	47	11.33
050 교육	1 (1)	2,100	2.01	2,100	2.07	0	0.00
053 평생·직업교육	1 (1)	2,100	2.01	2,100	2.07	0	0.00
060 문화및관광	4 (4)	2,784	2.66	2,451	2.42	333	13.56
061 문화예술	1 (1)	785	0.75	785	0.77	0	0.00
062 관광	1 (1)	776	0.74	637	0.63	139	21.77
063 체육	1 (1)	1,192	1.14	1,005	0.99	188	18.69
064 문화재	1 (1)	31	0.03	25	0.02	6	23.86
080 사회복지	7 (7)	74,933	71.73	76,029	74.96	△1,097	△1.44
081 기초생활보장	1 (1)	69	0.07	87	0.09	△18	△20.75
084 보육·가족및여성	2 (2)	54,648	52.31	51,513	50.79	3,135	6.09
085 노인·청소년	3 (3)	16,876	16.15	16,268	16.04	608	3.74
086 노동	1 (1)	3,340	3.20	8,162	8.05	△4,822	△59.08
090 보건	2 (2)	2,995	2.87	1,460	1.44	1,535	105.20
091 보건의료	2 (2)	2,995	2.87	1,460	1.44	1,535	105.20
100 농림해양수산	13 (13)	5,125	4.91	4,618	4.55	507	10.99
101 농업·농촌	10 (10)	2,932	2.81	3,101	3.06	△169	△5.45
102 임업·산촌	3 (3)	2,193	2.10	1,517	1.50	676	44.58
110 산업·중소기업	7 (7)	4,714	4.51	3,904	3.85	810	20.75

분 야 · 부 문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111 산업금융지원	1 (1)	650	0.62	350	0.35	300	85.71
112 산업기술지원	1 (1)	1,601	1.53	1,001	0.99	600	59.92
114 산업진흥·고도화	3 (3)	2,433	2.33	2,553	2.52	△120	△4.7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2 (2)	30	0.03	0	0.00	30	100.00
120 수송및교통	1 (1)	4,280	4.10	4,300	4.24	△20	△0.47
121 도로	1 (1)	4,280	4.10	4,300	4.24	△20	△0.47

○ 전북도의 조직별 총괄표(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 조직 별 】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43 (43)	104,470	100.00	101,420	100.00	3,050	3.01
본청	31 (31)	100,084	95.80	97,682	96.31	2,402	2.46
행정지원관	1 (1)	325	0.31	193	0.19	132	68.27
행정지원관	1 (1)	325	0.31	193	0.19	132	68.27
기획관리실	1 (1)	2,100	2.01	2,100	2.07	0	0.00
교육법무과	1 (1)	2,100	2.01	2,100	2.07	0	0.00
민생일자리본부	3 (3)	5,591	5.35	9,513	9.38	△3,922	△41.23
일자리창출정책관	1 (1)	3,340	3.20	8,162	8.05	△4,822	△59.08
민생경제과	1 (1)	650	0.62	350	0.35	300	85.71
기업인력지원과	1 (1)	1,601	1.53	1,001	0.99	600	59.92
문화체육관광광국	3 (3)	2,753	2.64	2,426	2.39	327	13.46
문화예술과	1 (1)	785	0.75	785	0.77	0	0.00
관광산업과	1 (1)	776	0.74	637	0.63	139	21.77
체육진흥과	1 (1)	1,192	1.14	1,005	0.99	188	18.69
새만금환경녹지국	1 (1)	956	0.91	1,081	1.07	△125	△11.56
산림녹지과	1 (1)	956	0.91	1,081	1.07	△125	△11.56
전략산업국	4 (4)	2,193	2.10	2,283	2.25	△90	△3.94
미래산업과	1 (1)	2,100	2.01	2,220	2.19	△120	△5.41
부품소재과	1 (1)	63	0.06	63	0.06	0	0.00
신재생에너지과	2 (2)	30	0.03	0	0.00	30	100.00
농수산식품국	3 (3)	977	0.94	970	0.96	7	0.67
첨단농업과	2 (2)	707	0.68	700	0.69	7	0.93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식품생명산업과	1 (1)	270	0.26	270	0.27	0	0.00
복지여성보건국	8 (8)	74,588	71.40	69,327	68.36	5,261	7.59
사회복지과	1 (1)	69	0.07	87	0.09	△18	△20.75
여성청소년과	3 (3)	54,961	52.61	51,848	51.12	3,112	6.00
노인복지과	2 (2)	16,563	15.85	15,933	15.71	631	3.96
보건위생과	2 (2)	2,995	2.87	1,460	1.44	1,535	105.20
건설교통국	1 (1)	4,280	4.10	4,300	4.24	△20	△0.47
도로공항과	1 (1)	4,280	4.10	4,300	4.24	△20	△0.47
대외소통국	5 (5)	5,864	5.61	5,077	5.01	787	15.51
대외협력과	2 (2)	600	0.57	686	0.68	△86	△12.53
공보과	1 (1)	10	0.01	10	0.01	0	0.00
다문화교류과	1 (1)	4,648	4.45	3,951	3.90	697	17.64
홍보기획과	1 (1)	606	0.58	430	0.42	176	41.00
소방안전본부	1 (1)	458	0.44	411	0.41	47	11.33
소방행정과	1 (1)	458	0.44	411	0.41	47	11.33
직속기관	8 (8)	2,636	2.52	2,854	2.81	△218	△7.64
농업기술원	7 (7)	1,744	1.67	1,978	1.95	△234	△11.81
농업기술원 (자원개발국)	5 (5)	691	0.66	741	0.73	△50	△6.75
농업기술원 (현장지원국)	2 (2)	1,053	1.01	1,237	1.22	△184	△14.84
공무원교육원	1 (1)	892	0.85	877	0.86	15	1.76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1 (1)	892	0.85	877	0.86	15	1.76
사업소	4 (4)	1,750	1.67	884	0.87	865	97.84

제2절 전주시 사례

1. 개요 : 총평

-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2010년부터 시행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후 2013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인해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았음
-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규모는 크지만 사업내용은 복지나 농수산, 환경 등 기능이 단순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각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각 실과 부서별로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 분석해야 할 성별수혜분석 분야 등이 다양하여 중앙보다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매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따라서는 일부 부서만이 해당되어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이 좀 더 쉬울 수 있음
 - 반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일부 부서가 아닌 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해당되어 예산담당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담당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선별해 낸 후,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실정임
 - * 지방재정법 개정 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까지는 1년 여 밖에는 준비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실정이었으므로 중앙보다 지방은 시작단계부터 어려운 여건이 있음
- 전주시의 예산부서, 실국별, 사업부서별 성인지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자료를 검토해 보면, 성인지 예산서를 마치 여성 인지 예산서로 인식하고 작성한 듯한 면이 강한데 이것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

자체에서 오인하고 있는 부분임

- 즉, 성평등 목표와 예산편성 방향, 대상사업의 선정사유 등에는 모두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모든 사업에 대해 여성이 취약하고 타 예산을 모두 여성관련 정책에 배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함
-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은 사업시행 결정 전 해당 사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되 남성에게 좀 더 필요할 사업이라면 남성관련 예산에, 여성에게 좀 더 필요할 사업이라면 여성관련 예산에 더 많이 편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 평 등과 예산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전주시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 모든 초점이 여성에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며,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서만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시의 전체 예산 중 성인지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음
 - 이것은 전체 예산(사업별, 기능별, 조직별), 실국별 예산, 사업부서별 예산 모두에 해당되는데 전체 성인지 예산 사업 중에서 사업개수와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외에 전주시 전체 예산 중, 실국별 예산 중, 사업부서별 예산 중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음
 - 전주시의 경우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본부, 보건소, 완산구, 덕진구 등 어느 부문에서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적 예산비중이 높고 낮은지를 알 수 없으며 이것은 각 과별 예산서도 마찬가지임
 - 향후 전주시 전체적으로, 각 실국, 과별 성인지 예산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각 분야, 부문별 성인지적 경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부서, 실국, 전체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 비

중이 명기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임

- 전주시의 각 부서, 실국 등이 제시한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편성방향은 모두 여성 일자리 확대, 인력양성, 문화기반 조성 등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각 부서별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예산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로 이해됨
-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사업 설명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산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편성 규모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사유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기술되고 있음
 -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평등 목표 또한 근거 없이 나열되어 있음
- 전주시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문제는 타 지자체에도 해당이 되는데, 우선 지방의 성별 기초통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성별수혜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별 대상자 통계가 없으므로 그 수혜자에 대한 통계도 산출하기 힘들며, 예산편성도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로 성별기초통계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한 후 추진해 나가야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의 경우 사업선정 사유와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이 형식적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예산편성방법에 대한 교육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됨
 -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시 전체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사업담당자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 편성방법 등에 대해 적
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임

2. 전주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가. 전주시의 성평등 목표

- 전주시의 성평등 목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본다면 성인지 예산이란 여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
로 지나치게 여성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음
 - 남성과 여성 양자 모두를 충분히 고려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3-2> 전주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취업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안심출산 및 보육환경 조성○ 시민편익증진의 친여성 정책증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편익증진- 여성편의시설 확충 및 여성의 정착지원 |
|---|

- 전주시의 각 국과 직속기관, 구청별 성평등 목표를 살펴보면 조직 간에
기능들이 모두 상이하지만 성평등 목표는 비슷해 보임
 - 대부분의 부서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교육, 편의시설 제
공이라는 범위 안에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업부서도 동일함
 - 따라서 각 국별 조직이나 사업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사업시행 시 성별영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표 3-3> 전주시의 각 국, 직속기관, 구청별 성평등 목표

기획조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행정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 강화 ○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계층간 위화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복지환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 창출 및 확대 ○ 여성의 권익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양육여건 개선 ○ 성평등 문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아동의 돌봄서비스의 균등
문화경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문화 확산,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 여성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 여성 역량 강화
건설교통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업 홍보시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 여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물 설치 등
도시재생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평등 기반조성과 여성권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점검.보수에 대한 서비스 지원시 여성 취약계층 세대의 서비스 우선 지원 - 취업 영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공공체육시설의 여성편의시설 확대
신성장산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및 IT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 여성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 우수 여성인력 양성 지원 ○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및 IT분야 남녀 평등하게 경제활동 참여 제고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권익 및 건강 보호
완산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도록 실현
덕진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반영 과정에서 직원 욕구 및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여성권의 성장 ○ 성평등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 문화 조성 및 성별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

나.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 사업별, 기능별 구성

- 전주시는 2012년 현재 전체 37개 성인지 예산사업에 21,09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2.82%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조직별로는 복지환경국이 22.94%(48억 4천만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기획조정국으로서 14.86%(31억 3천만원), 도시재생사업단이 12.36%(26억원)의 순서임
 - 타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 부분에 쏠림 현상이 심한 반면 전주시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각 국과, 사업소, 외청 간의 성인지 예산사업 비중이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표 3-4> 전주시의 조직별 성인지 예산서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37 (37)	21,092	100.00	20,513	100.00	579	2.82
본청	15 (15)	11,757	55.74	13,112	63.92	△1,355	△10.34
기획조정국	3 (3)	3,134	14.86	3,166	15.43	△32	△1.00
자치행정과	2 (2)	2,797	13.26	2,883	14.05	△86	△2.97
사회체육과	1 (1)	337	1.60	283	1.38	54	19.15
복지환경국	6 (6)	4,838	22.94	4,676	22.80	162	3.45
생활복지과	1 (1)	1,234	5.85	1,571	7.66	△337	△21.47
여성가족과	3 (3)	3,574	16.94	3,072	14.98	502	16.33
자원관리과	1 (1)	8	0.04	8	0.04	0	0.00
환경과	1 (1)	23	0.11	26	0.12	△3	△11.25
문화경제국	4 (4)	1,711	8.11	4,182	20.39	△2,471	△59.09
전통문화과	1 (1)	60	0.28	80	0.39	△20	△25.00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한스타일관광과	1 (1)	103	0.49	77	0.37	27	34.68
지역경제과	1 (1)	1,409	6.68	3,951	19.26	△2,542	△64.35
친환경농업과	1 (1)	139	0.66	75	0.37	64	85.60
건설교통국	2 (2)	2,074	9.83	1,088	5.30	986	90.63
교통과	1 (1)	1,974	9.36	988	4.82	986	99.80
도로안전과	1 (1)	100	0.47	100	0.49	0	0.00
직속기관	3 (3)	941	4.46	851	4.15	89	10.46
보건소	3 (3)	941	4.46	851	4.15	89	10.46
보건행정과	2 (2)	910	4.31	828	4.04	82	9.85
보건지소	1 (1)	31	0.15	24	0.11	8	31.91
외청	13 (13)	5,649	26.78	4,867	23.73	782	16.07
완산구청	6 (6)	3,149	14.93	2,726	13.29	424	15.55
완산 행정지원과	1 (1)	317	1.50	317	1.55	0	0.00
완산 민원봉사실	1 (1)	71	0.34	109	0.53	△38	△35.01
완산 생활복지과	1 (1)	106	0.50	100	0.49	6	5.77
완산 경제교통과	1 (1)	24	0.11	14	0.07	10	70.42
완산 건축과	1 (1)	644	3.05	560	2.73	84	14.99
완산 건설과	1 (1)	1,987	9.42	1,625	7.92	362	22.28
덕진구청	7 (7)	2,500	11.85	2,141	10.44	359	16.74
덕진 행정지원과	1 (1)	170	0.81	155	0.76	15	9.68
덕진 민원봉사실	1 (1)	57	0.27	82	0.40	△25	△30.56
덕진 생활복지과	1 (1)	90	0.43	90	0.44	0	0.00
덕진 경제교통과	1 (1)	27	0.13	19	0.09	8	41.69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덕진 환경위생과	1 (1)	15	0.07	10	0.05	5	44.43
덕진 건축과	1 (1)	312	1.48	255	1.25	56	21.97
덕진 건설과	1 (1)	1,829	8.67	1,529	7.46	300	19.62
사업소	6 (6)	2,746	13.02	1,682	8.20	1,063	63.20
도시재생사업단	3 (3)	2,608	12.36	1,400	6.82	1,208	86.28
신도시사업과	2 (2)	538	2.55	60	0.29	478	796.60
스포츠타운조성과	1 (1)	2,070	9.81	1,340	6.53	730	54.48
신성장산업본부	2 (2)	70	0.33	220	1.07	△150	△68.18
탄소산업과	1 (1)	20	0.09	20	0.10	0	0.00
영화영상산업과	1 (1)	50	0.24	200	0.97	△150	△75.00
기타사업소	1 (1)	68	0.32	62	0.30	5	8.65
시립도서관	1 (1)	68	0.32	62	0.30	5	8.65

다.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사업 설명서

- 전주시가 선정한 37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들을 살펴보면, 막연한 여성 대상 사업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아동, 장애인 및 노인복지사업, 환경관리사업, 건설교통사업들이 다수 존재함
- 또한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한 사업목적,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근거 없는 산출, 주먹구구식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의 사업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사유가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일반사업인데 막연히 여성 사회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기술한 경우

- 사업수혜자가 사업대상자보다 많은 경우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각각 관련이 없는 경우
- 반면, 타당성 있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산출, 예산 편성, 성과목표 도출까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사업설명서도 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자연생태박물관 해설사 지원’(자체사업): 이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사유가 뚜렷하고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예산구분, 성과목표와는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목적: 방문 관람객에게 전시물에 대한 쉽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물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설사 친절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실시
 - 선정사유 및 여건: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 14명 중 12명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대상자(명):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21	16	14	14
여 성	3(14.3%)	2(12.5%)	2(14.3%)	7(50%)
남 성	18(85.7%)	14(87.5%)	12(85.7%)	7(50%)

- 사업수혜자(명):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21	16	14	14
여 성	3(14.3%)	2(12.5%)	2(14.3%)	7(50%)
남 성	18(85.7%)	14(87.5%)	12(85.7%)	7(50%)

－ 예산구분(백만원):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20	26	23	23
여 성	3(14.3%)	3(12.5%)	3(14.3%)	11(50%)
남 성	17(85.7%)	22(87.5%)	19(85.7%)	11(50%)

○ ‘한스타일하는 학교 만들기’(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명확하고 현행 사업수혜자에 대해 타당하게 산출해 냈으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과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으나, 단지 사업대상자를 전주시민 전체로 하기보다는 전주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사업목적: 전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이해와 체험으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기회 제공

－ 선정사유 및 여건 : 기존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단기성, 이벤트성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사업대상자(전주시민, 명):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644,465	651,015	647,504	650,000
여 성	327,716(50.9%)	329,919(50.7%)	327,757(50.6%)	328,900(50.6%)
남 성	316,749(49.1%)	321,096(49.3%)	319,747(49.4%)	321,100(49.4%)

자료: 전주인구통계, 각년도.

- 사업수혜자(명):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606	680	640	700
여 성	342(56.4%)	376(55.3%)	350(54.7%)	378(54%)
남 성	264(43.6%)	304(44.7%)	290(45.3%)	322(46%)

- 예산구분(백만원):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0	80	60	80
여 성	0(0%)	44(55.3%)	33(54.7%)	43(54%)
남 성	0(0%)	36(44.7%)	27(45.3%)	37(46%)

- 성별격차 원인분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고 학교개방시간이 교직원 퇴근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아버지) 참여가 어려우며, 한지사 침선공예 등 프로그램 특성상 여성 참여율이 높음

○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자체사업): 이 사업은 전주시 자체 추진사업으로서 여성 영농인들이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착안해서 전주시 전체 영농인들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농기계 지원을 받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수혜자로 하여 매년 여성수혜자의 예산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농촌고령화 및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일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여성의 영농참여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 선정사유 및 여건 : 소형농기계 보급으로 여성의 영농 참여기회 확대

－ 사업대상자(명):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17,774	17,774	17,774	17,774
여 성	8,948(50.3%)	8,948(50.3%)	8,948(50.3%)	8,948(50.3%)
남 성	8,826(49.7%)	8,826(49.7%)	8,826(49.7%)	8,826(49.7%)

－ 사업수혜자(명):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31	25	49	50
여 성	2(6.5%)	3(12%)	8(16.3%)	20(40%)
남 성	29(93.5%)	22(88%)	41(83.7%)	30(60%)

－ 예산구분(백만원)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63	75	139	142
여 성	4(6.5%)	9(12%)	23(16.3%)	57(39.9%)
남 성	59(93.5%)	66(88%)	116(83.7%)	86(60.1%)

-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영농작업은 대부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여성 참여가 어려움
- － 향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농기계를 보급·지원

〈참고자료〉

○ 전주시 성인지 예산서의 사업별 총괄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7 (37)	21,092	20,513	579	2.82
여성 정책 기본 계획 사업	소계	4 (4)	1,147	667	480	71.92
	일반회계	4 (4)	1,147	667	480	71.9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6 (6)	6,032	8,750	△2,717	△31.06
	일반회계	6 (6)	6,032	8,750	△2,717	△31.0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00
기타	소계	27 (27)	13,913	11,096	2,817	25.39
	일반회계	27 (27)	13,913	11,096	2,817	25.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00%

○ 전주시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별 총괄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 :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 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37 (37)	21,092	100.00	20,513	100.00	579	2.82
010 일반공공행정	6 (6)	3,413	16.18	3,547	17.29	△134	△3.78
016 일반행정	6 (6)	3,413	16.18	3,547	17.29	△134	△3.78
060 문화및관광	5 (5)	2,638	12.51	1,842	8.98	796	43.23
061 문화예술	2 (2)	128	0.61	142	0.69	△15	△10.25

분 야 · 부 문	개수	예산액	전년도		비교증		
			구성비	예산액	감	증감률	
062 관광	1 (1)	103	0.49	77	0.37	27	34.68
063 체육	2 (2)	2,407	11.41	1,623	7.91	784	48.32
070 환경보호	3 (3)	46	0.22	44	0.21	2	3.86
072 폐기물	1 (1)	8	0.04	8	0.04	0	0.00
074 자연	1 (1)	23	0.11	26	0.12	△3	△11.25
076 환경보호일반	1 (1)	15	0.07	10	0.05	5	44.43
080 사회복지	7 (7)	6,412	30.40	8,783	42.82	△2,372	△27.00
084 보육·가족및 여성	3 (3)	3,574	16.94	3,072	14.98	502	16.33
085 노인·청소년	3 (3)	1,429	6.78	1,761	8.58	△331	△18.82
086 노동	1 (1)	1,409	6.68	3,951	19.26	△2,542	△64.35
090 보건	3 (3)	941	4.46	851	4.15	89	10.46
091 보건의료	3 (3)	941	4.46	851	4.15	89	10.46
100 농림해양수산	3 (3)	191	0.90	108	0.53	82	75.84
101 농업·농촌	3 (3)	191	0.90	108	0.53	82	75.84
110 산업·중소기업	2 (2)	70	0.33	220	1.07	△150	△68.18
114 산업진흥· 고도화	1 (1)	50	0.24	200	0.97	△150	△75.00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1 (1)	20	0.09	20	0.10	0	0.00
120 수송및교통	4 (4)	5,890	27.92	4,242	20.68	1,648	38.85
121 도로	3 (3)	3,916	18.57	3,254	15.86	662	20.35
12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1 (1)	1,974	9.36	988	4.82	986	99.80
140 국토및지역개발	4 (4)	1,494	7.08	876	4.27	618	70.58
142 지역및도시	4 (4)	1,494	7.08	876	4.27	618	70.58

제3절 완주군 사례

1. 개요 : 총평

- 완주군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을 기재하며, 사업총괄표와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완주군의회에 제출함
-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는 크게 사업총괄표, 부서별 성평등 목표 및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완주군의 성인지 예산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 총괄표는 회계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전년 대비로 표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에 15개 사업에 대해 3,882백만원이 편성되어 2011년도에 비해 251백만원이 감소함(6.07% 감소)
 -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 없음

<표 3-5> 완주군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수와 예산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2012예산액	2011예산액	증감비교	증감률
총계	15	3,882	4,133	-251	-6.07
일반회계	15	3,882	4,133	-251	-6.0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 2012년도 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을 기준으로 전북도 완주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사업은 총15개 사업이며, 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9개(60.0%),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6개(40.0%)이고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은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1,794백만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46백만원이 감소함(-2.50%)
-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2,088백만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205백만원이 감소함(-8.93%)

<표 3-6> 완주군의 사업별 성인지 예산내역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수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비교	증감률	
총계	15	3,882	4,133	-251	-6.07	
여성정책기 본계획사업	소계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성별영향분 석평가사업	소계	9	1,794	1,840	-46	-2.50
	일반회계	9	1,794	1,840	-46	-2.5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타	소계	6	2,088	2,293	-205	-8.93
	일반회계	6	2,088	2,293	-205	-8.9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주 :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기준

- 사업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 주민정보화교육,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보조), 완주군 도서관운영,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보조), 자연휴양림관리, 교통안전시설정비, 가로등 정비사업, 농기계교육훈련(보조) 등을 들 수 있음
-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는 법제 및 소송관리, 수요자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도로명 주소사업, 한국농정신문 보급,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등을 들 수 있음

2. 완주군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가.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 완주군의 경우 각 부서별(실·과)로 2012년도 성평등 목표 및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조직에 따라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을 추상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일부 부서(예 : 농촌활력과)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완주군의 예산정책기조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미흡한 수준임

<표 3-7> 완주군의 부서별 성평등 목표 및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부서	2012년 성평등 목표	2012년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기획감사실	여성인력활용 기반 내실화(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 충족(법분야에 대한 여성의 관심제고) 통합적인 여성정책 추진(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2012년도 간단한 시범작성을 통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및 체계화 정립
주민생활지원과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통합적 여성 정책 추진) 여성인력활용으로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자원봉사활동 참여대상자 증가에 따른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및 여성 자원 봉사영역 전문성 제고 여성 사회활동 참여 급증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형 복지서비스 전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지원과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및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제고를 통한 행정효과 거양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참여비율의 증가 및 수혜자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고
농촌활력과	지역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완주군의 핵심정책인 공동체 회사 100개소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공동체 사업 소양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민선 5기 핵심공약인 공동체 100개소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2,000개의 체계적 발굴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서	2012년 성평등 목표	2012년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많은 도서를 제공하고, 독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환경위생과	성평등 정책추진으로 기반강화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여성수혜자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산림공원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의 양성평등 추진	시설 및 운영에서 남녀평등 지원 추진
건설교통과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참여자의 경제적 이익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에 대한 양성평등의 기회 제공으로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재난관리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 응하여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행정 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 하게 수혜를 받도록 양성평등 실현	재해예방 사업별 성별수혜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남성과 여성의 상황과 영향을 고려한 맞 춤형 예산편성
민원봉사과	여성인력 취업률 제고(민원안내도우미 여성채용, 도로명주소 제작배부)	여성인력 우선 채용 및 예산편성
친환경농업 축산과	농업기술에 대한 남성·여성 간 균형 있 는 교육을 통하여 성평등 정책추진 및 다양한 평등문화 확산	남녀 평등예산 편성 추진
자원개발과	남성·여성 간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성평등 정책추진	여성에 대한 균등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에 대한 남성·여성 간 균형 있 는 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및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의 경우 성평등 목표 설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직 부서의 정책목표를 그대로 기술한 경우나 여성 위주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조직부서가 담당하는 기능을 토대로 하되 성평등과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이 성별수혜 분석을 통한 남성과 여성 간에 균등지원이나 평등한 참여를 중심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으나, 예산편성 방향이 추상적이거나 여성 수혜를 향상시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따라서 양성평등 및 여성과 남성의 예산수혜 평등 관점에서 핵심적인 정책방향,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양성평등 실현
 - 사업별 성별수혜분석을 통한 성평등 목표 및 성인지 예산편성 기초
 - 남성과 여성의 상황과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예산편성 방향 제시
- 양성평등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서의 명확성이 불분명한 사업이 발견됨.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성별분리 통계 미흡으로 정확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성별수혜분석 및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문제를 야기함
- 따라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분리 통계를 파악하여 당해 지역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간에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성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설명서

-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설명서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비롯하여 사업의 주요 내역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성인지 관련 대상사업 및 선정이유,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배분), 성별격차 원인분석, 향후추진계획,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12년도 전북도 완주군의 성인지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대표적인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보조)(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 사업기간 : 2011년01월01일~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 총사업비 : 593백만원
- 사업내용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선정사유

- 대상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선정사유 및 여건 : 여성인력 활용 확대채용,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 성장동력 분야 제고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비교	증감률
계	153	148	5	3.38%
자체재원	23	-	-	-
광역보조금	23	-	-	-
국고보조금	107	-	-	-

○ 성별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0	0	0	0
여성	0(0.0%)	0(0.0%)	0(0.0%)	0(0.0%)
남성	0(0.0%)	0(0.0%)	0(0.0%)	0(0.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10	10	10	20
여성	9(90%)	8(80%)	7(70%)	12(60%)
남성	1(10%)	2(20%)	3(20%)	8(40%)

－ 예산배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148	148	153	297
여성	133(90%)	119(80%)	107(70%)	178(60%)
남성	15(10%)	30(20%)	46(20%)	119(40%)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 아동복지교사의 특성상 여성교사 참여비율의 확대가 바람직함

○ 향후 추진계획

- － 아동복지 교사의 여성교사 비율을 감안하여 남성교사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고 그 처우개선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 성평등 기대효과

- － 취약계층 여성인력의 전문성 함양 및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적 제공

○ 성과목표 : 없음

○ 사업별 설명서 검토결과

- －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으며,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평등을 위해 예산이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성인지 예산 반영에 대해 실적과 목표를 대비하거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통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음

2) 수요자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 사업기간 : 2011년01월01일~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완주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영유아보육법
- 총사업비 : 9,461백만원
- 사업내용
 -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 1인당 220천원
 -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 : 1인당 : 875천원
 - 만40세 이상 종합건강검진 실시 : 1인 230천원
 - 직원자녀보육수당 지급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선정사유

- 대상사업 : 자체추진사업
- 선정사유 및 여건 :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취업을 위한 참여비율 증가 추세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비교	증감률
계	1,835	1,964	△129	△6.57%
자체재원	1,835	-	-	-
광역보조금	-	-	-	-
국고보조금	-	-	-	-

○ 성별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706	706	713	713
여성	265(37.5%)	265(37.5%)	270(37.9%)	270(37.9%)
남성	441(62.5%)	441(62.5%)	443(62.1%)	443(62.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697	696	702	702
여성	260(37.3%)	263(37.8%)	268(38.2%)	275(39.2%)
남성	437(62.7%)	433(62.2%)	434(61.8%)	427(60.8%)

－ 예산배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907	1,100	1,032	1,200
여성	338(37.3%)	415(37.8%)	394(38.2%)	470(39.2%)
남성	569(62.7%)	684(62.2%)	638(61.8%)	730(60.8%)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취업희망에 따른 여성참여비율 증가추세

○ 향후 추진계획

- － 여성 행정 전문가 양성으로 여성취업 영역 및 일자리 확대
- － 여성편익을 위한 다양한 항목 개발 및 단체보험에 대한 선택권 확대

○ 성평등 기대효과

- － 공직사회 내에 우수한 여성 행정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자기계발 지원 및 다양한 지원 항목 발굴로 여성의 자기발전 기회부여 등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

○ 성과목표

- 여성 참여자 비율 확대 : 없음

○ 사업별 설명서 검토결과

-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예산수혜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사업임
- 그러나 완주군은 공무원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고려하지 않고 여성 위주의 예산 반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평등 관점에서 예산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취업희망에 따른 여성참여비율 증가 추세”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완주군의 공무원(남성, 여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내역을 실제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공무원에 대한 성별격차가 어디에서, 어떻게,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성과목표를 “여성 참여자 비율 확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3) 주민정보화 교육(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보화 마인드 향상 교육
- 사업기간 : 2011년01월01일~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규칙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선정사유
 - － 대상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선정사유 및 여건 : 정보교육을 접하는 성별유형 분석으로 정보화의 양성평등화 추진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비교	증감률
계	3	11	△8	△72.73%
자체재원	3	-	-	-
광역보조금	-	-	-	-
국고보조금	-	-	-	-

- 성별수혜분석
 -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28	32	32	32
여성	14(50.0%)	21(65.6%)	16(50.0%)	18(56.3%)
남성	14(50.0%)	11(34.4%)	16(50.0%)	14(43.8%)

-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19	28	32	32
여성	10(52.6%)	10(35.7%)	16(50.0%)	18(56.3%)
남성	9(47.4%)	18(64.3%)	16(50.0%)	14(43.8%)

- － 예산배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6	4	4	5
여성	3(50.0%)	1(35.7%)	2(50.0%)	3(56.3%)
남성	3(50.0%)	3(64.3%)	2(50.0%)	2(43.7%)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회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의 정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체계에 대한 마인드 함양
- 향후 추진계획
 - 양성의 균등배분에 의한 정보교육을 통하여 SNS네트워크 구축
- 성평등 기대효과
 - 맞춤형 교육으로 현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주민에게 기회 제공
- 성과목표 : 없음
- 사업별 설명서 검토결과
 - 주민정보화 교육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정보교육을 접하는 성별유형 분석으로 정보화의 양성평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간의 격차를 발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양성평등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격차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음
 - 현재 성과목표를 제시하지 않아서 주민정보화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요구됨

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품목별 생산·유통·가공 등 기술교류로 농장 경영능력 향상
 - 사업기간 : 2010년01월01일~2014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총사업비 : 83백만원
- 사업내용
 - 품목별 전문적인 기술 역량확보
 - 기술+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육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선정사유
 - 대상사업 : 자체 추진사업
 - 선정사유 및 여건 : 농업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비교	증감률
계	9	9	0	0.00%
자체재원	9	-	-	-
광역보조금	-	-	-	-
국고보조금	-	-	-	-

- 성별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786	922	890	920
여성	40(5.1%)	74(8.0%)	107(12.0%)	184(20.0%)
남성	746(94.9%)	848(92.0%)	783(88.0%)	736(80.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786	922	890	920
여성	40(5.1%)	74(8.0%)	107(12.0%)	184(20.0%)
남성	746(94.9%)	848(92.0%)	783(88.0%)	736(80.0%)

－ 예산배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이후
계	12	10	9	40
여성	1(6.2%)	1(10.0%)	1(11.1%)	8(20.0%)
남성	11(93.8%)	9(90.0%)	8(88.9%)	32(80.0%)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남성 위주의 농가경영

○ 향후 추진계획

－ 현재는 남성회원 위주로 연구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부부가 함께 가입하거나 여성농업인 참여 독려로 정보공유 및 신기술 접목 유도

○ 성평등 기대효과

－ 농업분야는 부계사회 경영 연장으로 남성중심의 경영에서 점차 여성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강화를 위한 전문능력 향상

○ 성과목표 : 없음

○ 사업별 설명서 검토결과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은 품목별 생산·유통·가공 등 기술 교류로 농장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고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임

－ 그러나 성별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구성 비율이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성별수혜,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완주군의 성별분리 통계에 기초하여 사업수혜 대상자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성별수혜분석 및 성별격차 원인을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와 전문능력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의 성평등 관점에서의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

○ 완주군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별 총괄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 계	15 (15)	3,882	100.00	4,133	100.00	△251	△6.07
010 일반공공행정	3 (3)	1,984	51.11	2,123	51.35	△138	△6.51
016 일반행정	3 (3)	1,984	51.11	2,123	51.35	△138	△6.51
060 문화및관광	2 (2)	143	3.67	103	2.50	39	38.14
061 문화예술	2 (2)	143	3.67	103	2.50	39	38.14
070 환경보호	1 (1)	12	0.31	12	0.30	0	△3.27
072 폐기물	1 (1)	12	0.31	12	0.30	0	△3.27
080 사회복지	2 (2)	421	10.85	733	17.73	△311	△42.49
084 보육·가족및여성	1 (1)	153	3.94	148	3.59	5	3.26
086 노동	1 (1)	268	6.91	584	14.14	△316	△54.10
100 농림해양수산	5 (5)	698	17.99	517	12.51	181	35.01
101 농업·농촌	4 (4)	266	6.85	227	5.49	39	17.28
102 임업·산촌	1 (1)	432	11.14	290	7.03	142	48.85
120 수송및교통	1 (1)	559	14.39	486	11.76	73	14.99
126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1 (1)	559	14.39	486	11.76	73	14.99
140 국토및지역개발	1 (1)	65	1.68	159	3.86	△94	△59.13
142 지역및도시	1 (1)	65	1.68	159	3.86	△94	△59.13

○ 완주군 성인지 예산서의 조직별 총괄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 :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 (15)	3,882	100.00	4,133	100.00	△251	△6.07
본청	12 (12)	3,849	99.14	4,123	99.76	△274	△6.65
본청	12 (12)	3,849	99.14	4,123	99.76	△274	△6.65
기획감사실	1 (1)	146	3.77	148	3.57	△1	△0.97
주민생활지원과	1 (1)	153	3.94	148	3.59	5	3.26
행정지원과	1 (1)	1,835	47.25	1,964	47.52	△130	△6.60
지역경제과	1 (1)	3	0.09	11	0.26	△7	△67.30
농촌활력과	1 (1)	268	6.91	584	14.14	△316	△54.10
문화관광과	2 (2)	143	3.67	103	2.50	39	38.14
환경위생과	1 (1)	12	0.31	12	0.30	0	△3.27
산림공원과	1 (1)	432	11.14	290	7.03	142	48.85
건설교통과	1 (1)	559	14.39	486	11.76	73	14.99
재난관리과	1 (1)	233	5.99	217	5.25	16	7.28
민원봉사과	1 (1)	65	1.68	159	3.86	△94	△59.13
직속기관	3 (3)	33	0.86	10	0.24	23	236.36
농업기술센터	3 (3)	33	0.86	10	0.24	23	236.36
친환경농업축산과	1 (1)	21	0.54	0	0.00	21	100.00
자원개발과	1 (1)	9	0.24	9	0.23	0	0.00
기술보급과	1 (1)	3	0.08	1	0.01	2	400.00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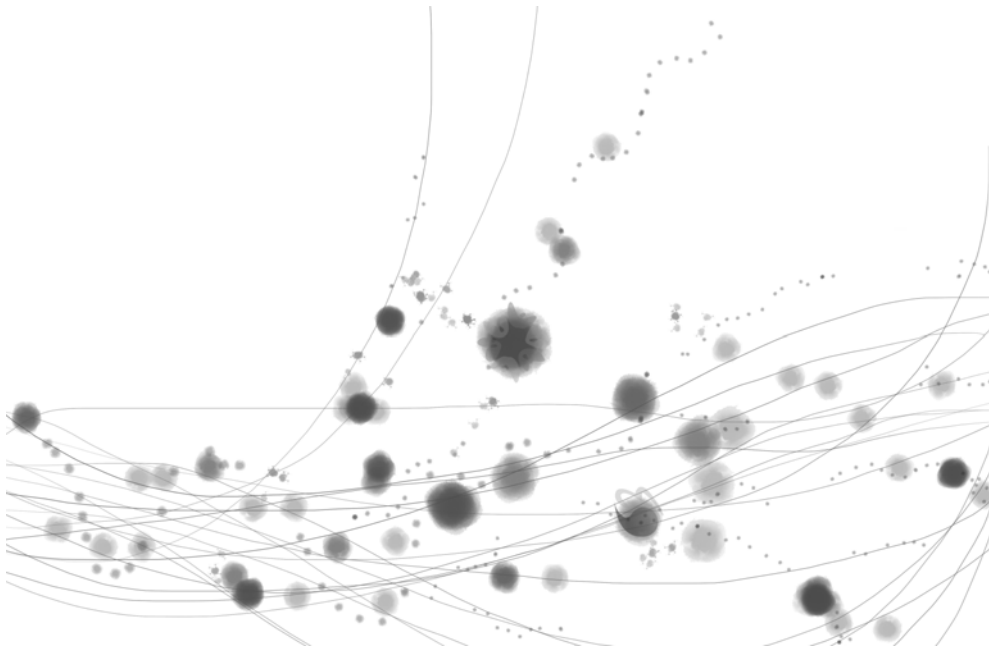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최근 동향

제1절 개요

제2절 성인지 예산의 국제적인 동향

제3절 성인지 예산의 사례

제4절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사점



제 4 장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최근 동향

제1절 개 요

- 전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1985년 세계여성회의(나이로비 회의)에서는, 당시 구조 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에 있어 여성들에게 과잉 부하가 걸려 있는 것이 밝혀짐
 - 그 결과 지금까지 성인지적으로 중립이라고 보아 온 거시경제 정책의 성에 대한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게 됨
 - 거시경제 정책을 성 시점에서 바라보는 경우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렇게 성평등을 예산과 관련지어 접근하려고 한 성인지 예산이 주목을 받게 됨
- 성인지 예산은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성 주류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매김되어 있음(村松, 2005)
 - 지금까지 세계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표 4-1>은 성인지 예산의 실시국가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실시국가가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임

<표 4-1> 성인지 예산 실시 국가

Africa	America	Asia	Europe	Middle East	Pacific
Bostwana	Barbados	Afghanistan	Austria	Israel	Australia
Egypt	Belize	Bangladesh	Belgium	Lebanon	Fiji
Kenya	Bolivia	India	Croatia		Marshall Island
Malawi	Brazil	Indonesia	Czech Republic		Samoa
Mauritius	Canada	Malaysia	France		
Morocco	Chile	Mongolia	Germany		
Mozambique	Ecuador	Nepal	Ireland		
Nigeria	El Salvador	Pakistan	Italy		
Nanubia	Mexico	Philippines	Netherlands		
Rwanda	Peru	South Korea	Norway		
Senegal	St Kitts-Nevis	Sri Lanka	Russia		
South Africa	United States	Thailand	Scotland		
Swaziland		Vietnam	Serbia & Bergalia		
Tanzania			Spain		
Uganda			Sweden		
Zambia			Switzerland		
Zimbabwe			United Kingdom		
Yemen					

- 성 예산은 1980년대 중반, 호주 연방정부가 실시한 여성 예산프로그램을 기원으로 함. 여성정책을 중시한 노동당의 호크 정권 시대,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가 성인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예산 성명 내에 공표함
 - 이 시도가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1995년 이후이며, 같은 해 세계여성회의(북경 회의)가 개최되어 성 주류화의 수단으로서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음
 - 이후 벨기에를 시작으로 유럽이나 유엔기관이 추진에 가속도를 냈으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 실시를 향한 지원이 시작되었음

- 영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은 페미스트 경제학자와 협력하여 성인지 예산분석(gender budget analysis)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음
 - 또한 UNIFEM(유엔 여성개발기금)이나 UNDP(유엔개발계획)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산워크숍 개최나 성인지 예산의 시험적용(pilot project)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JICA(국제협력기구)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성 정책 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로 성인지 예산 강의를 실시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의 실시는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표 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성 예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 그 실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페미니스트 연구자가 여성 예산 그룹을 결성하여, 중앙정부 예산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성인지 예산의 실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그 실시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종래 성인지 예산은 실시 주체에 따라, 정부 주도형과 풀뿌리 주도형으로 분류되고 있음(Sharp and Broomhill, 2002: 28-29)

① 정부 주도형

- 성인지 예산분석에서는 정부예산의 세입 및 세출의 비목별 데이터나 예산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성별통계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별통계는 정부의 내부 자료인 경우가 많아 정부 외부인이 이들 통계를 입수하는 것은 곤란함
- 그러나 정부가 성인지 예산의 실시 주체가 되는 경우 내부 자료나 각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비목과 시책과의 대응이나 예산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함

-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의 탁아소 관련 예산에 관한 성인지 예산 분석에서, 일하는 모친이 탁아소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이 분석에서 탁아소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 내 탁아소의 개설이나 부모의 통근 경로에 알맞은 장소에 탁아소를 개설하는 등 탁아소 입지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옴(Government of Australia 1985: 57)
- 정부 주도형의 성인지 예산을 실시한 국가·지역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스코틀랜드, 인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는 정부가 성인지 예산분석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 성명 또는 정부간행물로서 공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한국에서도 NGO와는 별도로 정부가 본격적인 대처를 시작함

② 풀뿌리 주도형

- NGO 등 비정부 조직이 성인지 예산의 실시 주체가 되는 경우, 정부의 내부 자료나 남녀별 통계에 대해 접근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풀뿌리형 성인지 예산분석은 정부의 견해와는 별도로 시민 독자적인 시점에서 예산의 본래적 기능이나 역할을 검토할 수 있음. 이것은 예산과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Sharp and Broomhill, 2002)
 -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NGO에 의한 세제 및 세입 분석의 결과, 기업의 납세액이 실제의 납세액보다 적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와 기업의 유착에 의한 것으로 성인지 예산은 지금까지 은폐되어 온 유착의 실태를 분명히 밝힌 것임(Krafchic, 2002: 84)
- 또한 풀뿌리 주도형의 성인지 예산은 정권 교체나 정치 정세의 변화 등 정치적 영향에 상당히 자유로워서 성인지 예산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96년 총선거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보수·자유당 연립정권으로 교체되어, 12년간 계속된 성인지 예산이 중단되었으며, 한편 남아프리카에서는 1996년부터 시작된 NGO의 성 예산이 계속하여 실시되고 있음
 - 풀뿌리 주도형의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남아프리카, 우간다, 영국, 탄자니아, 에콰도르, 러시아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성인지 예산의 실시 주체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지만, 정부 주도형의 경우에도 성인지 예산을 보급·정착시키는데 있어서 NGO의 관여가 필요함
- 예를 들면, 마셜 제도는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인지 예산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실시하였음. 이 프로젝트는 재무성이 실시 주체가 되었지만, NGO도 성인지 예산의 추진 위원회나 성인지 예산 워크숍에 참가하였는데, 이것은 성인지 예산의 효과적 실시로 연결된 것 뿐 만아니라, NGO의 능력 향상에도 공헌함(Sharp and Vas Dev 2004: 15). 이와 같이 성인지 예산의 실시에서 NGO의 참가를 빠뜨릴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해외 성인지 예산의 선행 연구의 소개가 중심이었으나, 이후 일본의 정부예산을 남녀 공동 참가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개관하는 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남녀 공동 참가 기본계획으로 책정된 정책예산만으로 그 분석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근년 여러 국가에서 성별 통계를 이용한 성인지 예산분석 및 더 나아가 예산 관리나 예산운영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구축이나 방법론의 개발이 주목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의 새로운 전개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성 예산 분석만으로는 성 평등 달성을 위한 예산조치(예산의 증가나 예산배분의 변경을 포함)

- 의 실현이 어렵다고 하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재정개혁이나 민주화 등 정치 및 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현실의 예산배분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심도 있는 연구까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목소리도 예상외로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해외에서 성인지 예산이란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예산분석의 실시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며, 각국의 상황이나 예산제도를 반영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Sharp, 2007 a).
- 남아프리카에서 성 예산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NGO, IDASA는 ‘여성 예산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음. 여성예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여성취향 예산의 분석을 의미한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함
 - 그러나 IDASA는 여성예산이라는 말이 이미 정착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명칭 변경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하고 있음(Budlender & Hewitt et al., 2002).
 - 이 외에 성인지 예산을 나타내는 말로서 성에 민감한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ing)이나 성 평등에 대응한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이 있는데, 이들 용어는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음(Sharp & Broomhill, 2002)
-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수립 준비 작업에서부터 평가를 거쳐 차년도의 예산수립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성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수립·관리시스템을 성에 민감한 예산제도(gender sensitive budgeting system)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구별되고 있음(김영옥, 2008)
- 최근 성 평등에 대응한 예산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그 정의도 확립되

고 있는데(Sharp, 2007 b), 결국 성 평등에 대응한 예산이란 성인지 예산과 예산분석, 성 평등 달성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제2절 성인지 예산의 국제적인 동향

1. 성인지 예산의 태동

- 성인지 예산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가 실시한 「여성예산프로그램」(Women's Budget Program)이 세계 최초의 시도였음
 - 1983년의 총선거로 승리를 얻은 노동당의 로버트 호크는 정권 발족과 동시에 자문기관으로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전문조사위원회(Secretaries' Task Force on the Status of Women)를 설치하였음
 - 동위원회의 구성원인 안 사마즈가 성 예산을 고안하였으며, 그 후에 여성문제 담당고문이 된 사마즈의 강한 리더십에 의해 성인지 예산은 수상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의 여성지위국(Office of the Status of Women)을 중심으로 실시됨(Sharp and Broomhill, 1990)
 - 성인지 예산분석은 각 부처의 ‘여성문제담당부국(Women's Unit)’과 여성의 지위 향상과의 제휴나 정책형성·분석 능력을 겸비한 페모크라트(femocrat)로 불리는 여성관료의 횡단적 네트워크에 의해 실시가 가능해졌음
 - 우선, 여성 문제 담당 부국은 예산과 여성 지위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여성지위국에 제출하였고, 여성지위국은 분석결과의 정리를 실시하고 여성 문제 담당 고문의 점검을 거친 다음, 1984년 「여성

예산프로그램」을 공표함

- 1986년 이후 성인지 예산분석 결과는 「여성예산성명」(Women's Budget Statement)으로서 예산서의 일부로서 공표되게 되었음. 이러한 성인지 예산은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 수준에서도 채택되어, 성인지 예산의 실시는 오스트레일리아 전 주정부에 보급됨
- 호주에서는 여성 예산의 실시에 따라 성에 대한 직원의 인식이 높아졌으며(Sawer 2002). 또한 분석결과를 「여성예산 성명」으로 공표함으로써 성에 대한 정부의 설명 책임이 명확하게 되었음
 - 이러한 성과가 인정된 한편,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났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성인지 예산분석에서 부처 간에 크게 차이가 있었다는 점임. 여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교육이나 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는 예산분석을 위해서 남녀별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하는 등 성인지 예산분석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여성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거의 없는 부처는 예산분석의 내용이나 질에 문제가 있었음
 - 예를 들면, 재무성은 ‘정부예산의 영향은 성에 중립적이다’라는 견해를 무너뜨리지 않고, 여성예산 프로그램의 실시에 회의적이었으며, 그 결과 성인지 예산 분석에의 대응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재무성이 여성 예산 성명으로 공표한 데이터는 거의 전년도의 재탕에 지나지 않고 상세한 성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함
- 1996년 노동당으로부터 보수·자유연합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대처가 현저하게 후퇴함. 즉, 여성지위국의 귀속 부처가 교체되고(수상 내각부로부터 가족·커뮤니티성으로), 인원과 예산삭감, 각 부처의 여성문제 담당부서의 폐지 등에 수반하여 여성예산 프로그램의 실시 체제가 약화되었음
 - 그 결과 전성기에는 200페이지가 넘는 ‘여성예산 성명’은 1996년에는 수십 페이지로 축소됨

2. 국제회의에서 성인지 예산분석의 주목

- 국제연합(UN)은 호주에서 실시된 여성예산 프로그램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987년 유엔은 호주 정부에 대해서, 여성의 지위 개선과 남녀평등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 본부 기구의 역할에 관한 유엔 전문가 회합에 대해 성인지 예산 프로그램의 보고를 실시하도록 함 (Sharp and Broomhill, 1990: 2)
-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은 1990년대 중순부터이며, 이것은 페미니스트 경제학이 거시 경제학을 젠더화하기 위한 이론적 범위의 구축이나 영연방 제국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영국의 다이안·엘손, 호주의 론다·샤프, 남아프리카의 데비·바드렌다)에 의한 성인지 예산 분석의 실천적 방법론의 개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연방 제국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성인지 예산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연방 사무국이나 UNIFEM, UNDP 등의 유엔기관에 대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였음
-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성 평등 정책의 수립과 실시를 국내 본부 기구와 그 실시를 감시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합의함
 - 또한 개발도상국으로 북경 행동강령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의 필요성이나 원조 공여국이 원조의 질이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젠더 관점에서 개발원조프로그램의 분석을 요구함(Bakker, 2008: 2)
- 북경행동강령에서는 다음의 4개 사항에 정부가 관여할 것을 요구함 (Bakker 2008: 2)
 - ① 공공부문의 지출에 있어서 여성의 편익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 ② 여성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의 조정
- ③ 유엔 회의나 정상회의에서 결의된 성인지 관련 선언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
- ④ NGO, 특히 여성단체나 그 외의 시민사회 조직의 자금을 유동화하기 위한 지원환경의 정비

<표 4-2> 성인지 예산 관련 국제연합 회의 및 국제회의

개최연도	회의 명칭
1995년	제4회 세계여성회의(북경회의)
1996년	영연방 제국 여성관련 정책담당장관 제5회 정례회의(트리니타드 도바고)
2000년	국제연합 밀레니엄회의(국제연합 밀레니엄 개발 선언)
2002년	개발자금을 관한 국제회의(몬테레이 합의)
2006년	OECD/ DAC 파리 원조 효과 향상 하이레벨 포럼
2007년	제51회 국제연합 여성지위위원회 전문가 회의
2008년	제52회 국제연합 여성지위위원회 ‘성 평등과 여성 권리강화를 위한 자금조달’

- <표 4-2>는 1995년 이후의 성인지 예산 관련 주요국 회의의 일람을 표시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96년에는 트리니타드 토바고에서 영연방국가 여성관련 정책담당 장관의 제5회 정례모임이 개최되어 5개국 연방가맹국(발바도스, 피지, 세인트 크리스토퍼·네비스, 남아프리카, 스리랑카)에서 성인지 예산의 시험적용(pilot project)을 실시할 것이 결정됨(Commonwealth Secretariat, 1999: 5)
 - 이 결정은 성인지 예산의 보급과 동시에 개발에 있어서 성 주류화를 원조정책에 정착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시험적용에서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가 개발한 예산분석 기법이 활용됨

- 2000년 이후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 보다 넓게 인식되면서, 2000년의 유엔 밀레니엄 회의나 제23회 유엔 특별 총회(여성회의 2000)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명시됨(Bakker, 2007:5)
 - 우선,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제3목표에 「성의 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달성에는 성인지 예산의 감시 및 설명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UNDP, 2005: 152)
- 제23회 유엔특별총회에서는 성평등, 개발, 평화의 북경행동강령에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금 확대와 지속적인 국제협력 실시가 확인되었고 특히, 선진국의 GNP의 0.7%를 정부개발원조(ODA)에 할당하는데 대한 재확인, 혁신적인 자금개발이나 정책, 시책, 사업의 모든 분야에 성 주류화를 통합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게 됨
 - 구체적으로는 성 평등이나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지원이나 모니터링, 사업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나 방법의 개발에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과정에 적절한 방법으로 성인지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함
- 2002년에는 개발자금을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몬트레이 합의에서 성인지적 개발을 포함한 개발에 대한 자금조달의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강조되었음. 그리고 모든 수준과 부문에 있어서 개발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하는 것이 장려되었음(Bakker, 2007: 5)
 - 그러나 몬트레이 합의에서는 인플레이 억제나 자금동원을 강조하는 경제정책과 빈곤감소, 인권옹호, 성평등 등의 사회정책과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았음
 - 2007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사회조사(The 2007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는 성 불평등이 경제적인 손실이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아울러 2005년, OECD/DAC 파리원조효과 향상 하이레벨 포럼에서 채택된 파리선언은 성 평등을 포함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함
- 2006년에 영국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다이안 엘 손은 UNIFEM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예산 : 여성차별 철폐조약(CEDAW)의 준수를 위한 정부예산의 감시」를 출판하였음. 여성차별 철폐조약은 1979년의 제34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규이며,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일반권고 제6호 「효과적인 국내본부 기구와 홍보」, 일반권고 제24호 「여성과 건강」, 일반권고 제23호 「정치적, 공적인 생활」(No. 23)이 이에 해당됨
 -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보건 부문이나 국내본부 기구에 충분한 자금을 할당하는 것, 여성의 참가나 선거제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DAW, 2007: 7)
- 2008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제52회 회의의 주제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강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설정하였으며, 전년도 2월의 제51회 회의에서는 제52회 회의의 준비로서 비공식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 분과회의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강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관해서 국가, 지역, 세계 수준의 기존의 방법이나 제도의 재검토, 성공 사례 및 교훈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 제시가 이루어짐
- 2007년 9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강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제52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합의 테마인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강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해 특히 개발자금에 관한 몬트레이 합의 관련(경제정책, 공공재

정, 성 평등에 대응한 예산운영, 국제자금의 동원, 2개 국 간 및 다국간 원조, 새롭고 혁신적인 자금원을 포함) 문제가 협의됨

- 이 회의에서 여성차별 철폐조약의 완전 실시와 밀레니엄 개발목표(특히 성 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제3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 평등에 대응한 예산 운영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함

○ 또한 빈곤 문제도 지적되고(DAW 2007: 16, No. 55), 다른 제도나 기제의 가능성과 과제, 주요한 관계자의 역할도 논의되었음(DAW 2007: 1). 이 회의의 중요한 성과는 성 평등에 대응한 예산(GRB)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전문가 회의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GRB는 성 평등에 관한 국제적인 관여나 북경행동강령을 포함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제23회 유엔 특별총회나 몬트레이 합의의 성과 등 광범위하게 미치는 공공재정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리고 GRB는 기술적이며 정치적인 본질을 가지는 2개의 상호 관련한 활동(성인지 예산분석과 성 평등 달성을 향한 정책이나 예산의 의사결정 과정의 변경)으로 정의되었음
 -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여성과 남성, 여아와 남아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됨
 - 성 평등 달성을 위한 예산조치, 예산과정과 성 평등에의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지하는 것

제3절 성인지 예산의 사례

1.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치적 여건과 제반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임
 - 제도 시행기관, 제도역량, 중점 추진단위 등에 그 원인이 있음
 - 1995년 북경 여성대회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
 - 2000년대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에서 확대 실시됨
- 주요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시 유형
 - 성인지 예산제도의 선도적 시행 국가는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들 수 있음
 - 성인지 예산을 독자적으로 개념화한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가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성 주류화 정책의 핵심 의제를 추진한 대표적 국가로는 스웨덴을 들 수 있음

2. 스페인

1)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 2007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국회 제출 보고서에 성별영향보고서(gender impact report)를 첨부하게 되어있으며 2003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 스페인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천성을 갖게 된 것은 2009년도에 제정된 국가규정(Royal Decree1083/2009, 7.3)의 강한 구속력에 기인함

- 예산안의 수립 및 제출 과정에서 반드시 각 '세출 프로그램별 성별분석보고서(expenditure program gender reports : EPGRs)'를 포함

2) EPGRs의 구조와 내용

- 중앙부처의 성별영향 지출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록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 평등기회(equal opportunities) 분야의 목적
 - 관계 법령 및 기존 정부계획과의 연관성 확인
 - 양성평등, 관계법령, 정부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 및 조치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 출발점에서의 진단(예산의 계획·편성 단계에서의 분석·진단)
 - 기대 효과와 결과(성과)
 - 성별영향결과평가(Gender Impact Evaluation)

3) 지방정부의 사례: 안달루시아(Andalusia) 주정부

(1) 개요

- 안달루시아 지방정부는 양성평등을 사회형평의 관점에서 중요시 하여 양성평등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며, 여성의 경제활동(노동시장 참여) 기회 제고 등의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Lisbon Agenda : 여성의 경제활동(노동시장 참여) 기회 향상 및 노동참여율 60% 목표 달성(2010년)을 천명함
-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주정부 :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는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G+ 방법(G+ method)"이라는 새로운 젠더영향분

석방법을 도입하였음

- 이는 지속가능한 예산모델(sustainable budget model)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질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남녀 간의 기회균등이 수렴될 수 있도록 예산지출 위계 중 프로그램(정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함

○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여성과 남성 간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

- 예산젠더영향위원회(Budget Gender Impact Commission) 설치

(2) 안달루시아 성인지 예산제도의 특징

○ 안달루시아 성인지 예산제도의 특징은 전부처가 공동작업을 추진(각 부처당 2명, 안달루시아 여성연구소(Andalusian Women's Institute) 2명, 안달루시아 통계국 2명을 포함하는 위원회 운영(평등한 대표성 확보)

- 젠더 관련 교육과 관계공무원의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젠더 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 안달루시아 G+ Project의 개요

-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년에 획기적인 “G+ 프로젝터”를 개발하여 실시 중에 있음
-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 예산제도를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정을 일상적 업무기능과 연계시키는 한편 다른 업무체계와의 연계·협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노력함
- 안달루시아 주정부가 실시한 G+ 프로젝터의 목적은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문화적인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음

- 예산 성별영향평가위원회(Budget Gender Impact Evaluation Committee)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리더십과 역할이 매우 두드러짐
-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조치를 취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효율적 협력구조 및 체계 조성
 - 제도 운영의 기술적 요인에 대한 지원
 - 단순 명확하고 유용한 지식수단의 개발(가이드라인, 관련 참고지침 등)
 - 교육, 워크숍, 네트워크 조성 등
- 새로운 방법론 : G+
 -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젠더 관점에 입각해서 접근하되, 특히 성별 민감도(gender sensitivity)와 성별 적정성(gender relevancy) 두 가지 판단준거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 성별 적정성은 변형능력(transformative capacity), 파급효과/영향역량(capacity for impact), 기능 적정성(functional relevance), 인력관리(personnel management)의 4가지임
 -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모든 예산사업(프로그램 수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달성의 효과와 영향에 입각해서 젠더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고안하였음(G+ 시스템의 구체화)
 - 이 과정에서 G0, G1, G, G+ 의 네 가지 유형화 방안을 도입하고 있음

<표 4-3> 스페인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G+ scale

적정성 (relevance)	젠더 민감성(gender sensitivity)	
	예	아니오
낮음	<G1> 기본적으로 내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수단적 특성을 갖는 프로그램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간접적 효과조차 없는 프로그램
중간	<G> 영향력이 낮은 프로그램: - 변형역량 제한적 - 제약적 기능 적정성	
높음	<G+> 변형역량, 영향/파급효과, 뚜렷한 기능 적정성으로 인해 중대한 이해관계를 보이는 프로그램	

자료 : 여성가족부(2011), p. 54. 재인용

3. 아이슬란드

1)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 아이슬란드는 2005년에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일정기간동안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함
 - 재무부 산하 양성평등센터(Centre for Gender Equality)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됨
 - 이후 2009년에 사회민주당과 진보녹색운동(Social Democratic Alliance and Left-Green Movement)이 천명하는 정부연합 정강 속에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음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이 정부예산의 준비·계획 및 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음

- “양성평등 감시(Gender Equality Watch)”와 “성인지 예산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on Gender Budgets)”가 설치되었음
 - 중앙부처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시범사업을 실시함
 - 시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 나타난 현상과 결과를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함(2011.10.1)

2) 성인지 예산제도 지원 조치와 시범사업의 운용 및 계획

- 교육, 네트워크, 전문가 영입과 컨설팅, 웹사이트 개설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지원 조치가 이루어짐
- 2011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별 시범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완료되었음
 -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1개 이상의 시범사업을 실시 완료함
 - 실시 결과 중앙부처 간에 시범사업의 편차(사업규모, 범위, 영향 및 파급효과 등)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부(Ministry of welfare)의 시범사업 사례

-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예방기금 할당(Allocations from the Prevention Fund)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론과 분석 및 결과를 수반하고 있음
 - 방법론 : Klatzer의 6단계 접근방법
 - 주요 분석 : 신청자, 수혜자, 의사결정권자와 관련된 성별영향분석 실시
 - 결과
 - 데이터 접수 및 신청자 평가방법 개발
 - 수혜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진행상태 보고서(progress reports)의 양식을 변경함

- 시범사업 완료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 3개년 실천계획(Three Year Plan for Implementation)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젠더영향이 충분히 가시적(visible)이어서 남녀 평등목표와 함께 정책·예산지출·소득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responsive)하고 재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있음
 - 예산은 남녀상태를 평등하게 해주고, 공공자금의 공정한 할당 및 공정한 징수
 - 모든 정책형성, 의사결정, 일상적 행정활동에 통합 반영
 - 분석결과 성별 차별 시에 남녀 간 재정수요를 반영한 공평한 징세와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변화 유도
 - 성인지 예산은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좋은 행정과 경제 관리의 중요한 제도의 일환으로 발전
 - 시범사업을 통한 지식축적과 정착, 발전에 활용
 - 구성은 주요 정책분야, 시범사업 지속, 성 주류화, 성별통계, 이해관계자간 협력, 교육의 6개 부문

3)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 아이슬란드의 중앙정부는 성인지 예산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정식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반면에 지방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에 착수하면서 조만간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단계에 있음
-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Reykjavik)시에서는 현재 성인지 예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외부로부터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채용하여 본격적인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시에 소속된 각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있음
 - 특히, 관심을 집중하는 분야로는 보육문제, 출산휴가(parental leave), 대중교통수단, 관광산업, 스포츠시설이용 등과 관련된 젠더이슈를 지적할 수 있음

4. 대만

- 대만에서 성인지 예산은 성 주류화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 분석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되어 옴
 - 1996년에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분석의 개념에 관한 보고가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짐
 - 2005년도에 여성권리 추진위원회(Committee on Women's Rights)에서 성 주류화 실시계획(The Plan on Implemen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이 채택됨
 - 그 결과, 정부는 성 주류화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성별통계, 성인지 분석, 성 평등에 대응한 예산, 성별영향조사 실시, 성 평등한 교육의 실현 등을 실시하였음
 - 또한 여성권리 추진위원회 내에 성 주류화 지원을 위한 전담팀(Task Force for Supporting Gender Mainstreaming)이 설치되었으며, 37개 부처 내에 성평등과 관련한 TF팀 설치와 그 담당자가 배치됨
 - 정부는 장래, 중장기 계획, 법안, 예산과정에 대해 성별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한 반영을 검토함
- 2006년에는 호주의 페미스트 경제학자인 론다 샤프가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
 - 성인지 예산(중국어로 성별 예산) 워크숍에서는 샤프에 의한 성인지 예산분석의 개념이나 기법에 관한 설명이나 호주의 실천 사례의 보고, 더 나아가 (공립)직업훈련학교의 예산이나 국가공무원의 연수에 관련한 성인지 예산분석의 시도가 보고되었음
- 대만의 성인지 예산의 최근 동향에 대해 한정적인 조사이나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행정원 산하기관인 ‘여성권리 추진위원회’나 ‘여성권리 추진과 개발

재단(Foundation for Women's Rights Promotion and Developments)'의 중국어 홈 페이지에서는 성별영향조사와 성인지 예산분석 기법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

5. 필리핀

1)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 필리핀의 국민소득 수준은 매우 낮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권의 보호 측면은 비교적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음
 - 필리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 선진국의 개발지원사업(ODA 사업)의 일환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권익 제고 등 여성권한 신장 전반에 걸치는 외부의 요구가 강하였기 때문임
- 필리핀 중앙정부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젠더와 개발(GAD: Gender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전
 - 성 주류화 기치를 표방, 각 부문별로 여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예산(예: 예산총액의 5%)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접근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 여성의 평등권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법적 장치로는 “여성 대헌장(Magna Carta of Women)”을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여성 대헌장에는 성 주류화를 비롯하여 성인지 예산과 GAD 원칙 등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음
 - 여성 대헌장은 필리핀의 모든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정책들에 대한 기본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법적, 실천적 위상을 지님

- GAD의 주요 내용은 모든 중앙·지방정부는 예산의 최소 5%를 GAD 재
정활동(양성 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 중점 예산사업)에 안배하도록 함
 - 성인지 예산의 주요 정책은 ‘필리핀 여성역할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NCRFW)’에 의해 주도
되고 있음
 - GAD 예산관행은 연도를 거듭하면서 참여기관(중앙정부 부처, 지방정
부, 산하기관 등)이 크게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되는 추세임
 - 2007년에 발간된 HGAD 가이드라인(Harmonized Gender and
Development Guidelines; 이하 HGAD라고 함)에 여성의 권한 신장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 내용을 다루고 있음
- * GAD와 관련되는 것으로 양성평등, 여성권한 신장, 인권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 성인
지 개발계획(Philippine Plan for Gender Responsive Development)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표 4-4>와 같음

<표 4-4> 필리핀의 PPGD 전략, 목적, 비전(일부 예시)

전략	목적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속적 접근성 강화 : 자본, 시장, 정보, 기술 등 • 경제적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 여성권한 신장 • 지속가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성별 편견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의 형성 및 실시 	여성 인권의 보호 및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사회정의 • 기본수요를 넘어선 인간 잠재성 실현 • 민주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사회에서의 GAD 주류화 • 성인지적 가버넌스 진작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성인지적 가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준에서의 자기 결정 • 인권 존중

자료 : 임성일 외(2011) p. 78에서 재인용

2)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 현재 필리핀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조치는 이미 10여 년 전에 취해졌음
 - 구체적으로 2001년에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필리핀 여성역할국가위원회(NCRFW)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정부 훈령을 시달한 바 있음
- 젠더 및 개발프로그램/정책사업/단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모든 지방정부들이 성인지 예산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GAD 분야에 적정 예산 배정을 요구
- 필리핀 성인지 개발계획(The Philippine Plan for Gender Responsive Development : PPGD, 1995~2025)은 중앙·지방정부의 행정활동 중 여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음
 - 성인지 개발계획에서 지방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젠더·개발계획(Gender and Development Plan)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Gender and Development(GAD) Plan						
■ LGU(지방정부 단위):						
■ Department/Office(부서):						
■ Calendar Year(회계연도):						
GAD PPAs	젠더 관련 이슈	예산산출물/ 목표수혜자	실시기간	성과지표	OPR	예산액
			총합:			
작성자: _____ 승인자: _____ 일시: _____						

6. 스웨덴

1)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국가 정책영역 17개 중의 한 영역으로 ‘민주주의, 성평등, 인권’의 정책 영역을 두고 있음
- 17개 국가의 주요 정책 영역 중 하나인 성평등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어 있음
 - 성평등 정책의 목적과 예산
 - 성평등 통계
 - 스웨덴에서의 성평등
 - 성주류화
 -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
 - ‘명예를 명분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압력
 - 성매매, 인신매매와의 투쟁
 -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 성 서비스 구매에 대한 입법
- 성평등 정책 분야의 내용 중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 있는 성평등 정책의 목적과 예산, 성평등 통계가 중요하며, 목표를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권력을 갖게 하는 것에 두고 있음
-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하기가 어려움
 - 국가예산에 대한 성평등 분석이 성인지 예산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성평등이라는 국가정책의 목표와 성주류화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목표는 아래와 같음
 -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할 : 여성과 남성은 의사결정을 위한 조건

- 을 만들고 활동적인 시민이 될 권리와 기회를 똑같이 가짐
 - 경제적 형평성 :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교육기회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동등하게 가져야 함
 - 가사 일에 무급 가사일과 돌봄 영역의 평등한 배분 : 가사 일에 똑같은 책임이 있고 똑같은 조건으로 돌봄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함
 -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없어야 함
-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2002년 전체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작됨
 -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에게 필요한 ‘여성예산’의 확보를 위한 예산금액으로서의 성인지 예산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 성평등 목표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시에 있음

2) 성인지 예산의 내용

- 성인지 예산서는 각 부처의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는 것과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이라는 예산서 부록으로 제출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2004년부터 예산과정에 초점을 맞춘 성주류화 시행을 위한 6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예산서의 절반 이상이 성별로 분리되어 표시되고 예산서에 포함되는 모든 표와 그림에 성별분석이 포함되었음
- 경제정책에서의 성 주류화가 처음으로 논의됨
 - －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예산서 부록(1987년~1988년)
 - －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다른 접근과 기회에 대한 보고서(1998년)
 - － 성평등 관점을 정부기구의 목표와 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 연구(1999년)

- 성평등국과 재정부 예산국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행
 - 예산과정에서의 젠더분석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 개발
 - 포괄적 정책영역에 대한 시범분석
 - 성주류화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평등 분석을 하도록 하고 성평등 목표와 결과지표를 포함하도록 하며,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보고서(예산안 부록)
- 방법론 측면에서 스웨덴은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 성주류화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달성될 수 있음
 - 지속적인 성주류화를 위한 과정(Procedure for Sustainable Gender Main Streaming : The Ladder Model)
 - 1단계 : 성평등의 이해,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의 개요 제공
 - 2단계 : 성주류화를 위한 조건 설정 및 방법 제시
 - 3단계 : 작업모형(the Checklist for Planning and Organising Development Work: METS)으로 성주류화 업무의 조직화와 수행 여부를 각 부처에서 점검하는 단계이며, 여기에서 METS의 체크리스트(일반적 사항, 목표와 관리, 훈련, 방법과 절차, 지원과 협력)를 설정
 - 4~6단계 : 성 평등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는 단계

3)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1)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 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0개의 카운티, 지역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지역의 자치단체이며 각각 다른 활동과 책임을 지고 있음

- 지방정부에서의 성평등 정책의 목표 역시 중앙정부의 목표와 동일함
- 국가의 성평등 정책의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CEMR(The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은 30개 유럽국가의 지방정부 연합체이며, 이들은 ‘지방의 삶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유럽헌장’(the European Charter for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Local Life)을 채택하였고, 스웨덴의 지방정부 연합 SALAR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the Regions)도 지지 서명하였음
- 지방정부에 있어서 성평등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직장에서 자기 발전, 책임성, 보수 등에서의 동등한 기회
 - 민주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 동등한 노동의 동등한 임금
 - 건강과 보호(care)를 위한 동등한 기회
 - 노인 보호에 있어서의 합당한 서비스
 - 그 외 저녁시간의 외출, 레저활동의 동등한 선택여부, 제한적인 젠더 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의미함
- 지방정부 역시 국가의 성평등 정책과 일관되게 성평등 목표와 성주류화의 연계 속에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착됨

(2)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의 분석방법으로 3R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3R 방법론은 성주류화를 위해 SALAR(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the Regions)에서 사용되었음
- 3R 방법의 목적은 각기 다른 활동이나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성평등을 통

합시키려는데 있음

- 대표성(representation), 자원(resources), 현실/실제 현상(realia)
- 3R 분석 방법은 SALAGA(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Gertrud Åström)이 1990년대 개발한 이래 SALAR에 의해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였음
- 3R의 방법론은 ① 성불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지식, ② 개인의 활동이나 조직, 직장에서의 성불평등 인지, ③ 불평등한 권력구조에서 그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있는 자신의 역할 인지, ④ 자신의 책임 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의 인지, ⑤ 실행으로 구체화됨
- 3R 분석방법에 대안(realisation) 단계를 추가한 4R 분석방법이 중앙정부에서 사용되기도 함
 - 대안(비전의 수립, 분석결과에 따른 성별 현황으로 새로운 목표와 지표 설정,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비율 결정, 평가와 점검)

4)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

- 성평등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성주류화는 성불평등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궁극적인 권력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묵시적인 함의에서 출발함
 -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성평등 사회의 구현은 어렵다고 봄
 -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남성의 더 높은 소득
 -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 가정 내 무급노동의 성별 간 불평등

· 남성 위주 신약의 임상실험

-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개편을 위해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부의 일반 주류정책에 대한 성평등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젠더의 권력 구조를 만들어 성주류화의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봄
-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정에 대한 성주류화의 적용이며, 예산에 대한 성평등 분석을 정의하고 있음
- 재정부는 예산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광의의 성별영향평가로도 볼 수 있을 것임
 - 재정부에서 담당하는 성인지 예산은 성 특정 예산이나 성형평성 예산 즉 ‘여성예산’의 합계가 아닌 예산과정에 대한 젠더분석이며, 이는 총 예산의 금액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의 부속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이 여성부와 재정부의 주도하에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성주류화이기 때문에 성주류화의 업무는 여성부(Minister for Gender Equality)와 재정부 뿐 아니라 내각부와 행정부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으로 국가 차원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제의 기본 틀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제4절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사점

○ 스페인

-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main streaming gender equality)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이루어짐
-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제도 구축 및 합리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명확한 양성평등 목표와 프로그램 성과목표의 합리적 설정과 연계하고 있음
- 성별 영향분석을 위한 시간, 역량적 제약과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부각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였음

○ 아이슬란드

- 유럽의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장애요인 등장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성평등 감시’와 ‘성인지 예산위원회’ 등 양대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제도의 도입, 정착, 운용에 큰 도움을 줌
- 각 부처별 시범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

- 낮은 국민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여성 대헌장’을 통한 여성 평등권 보호, 성인지 예산과 GAD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젠더이슈, PPGD, GAD 규정(GAD Mandate)
- 예산 중 5%를 여성을 위한 용도로 할당하는 예산할당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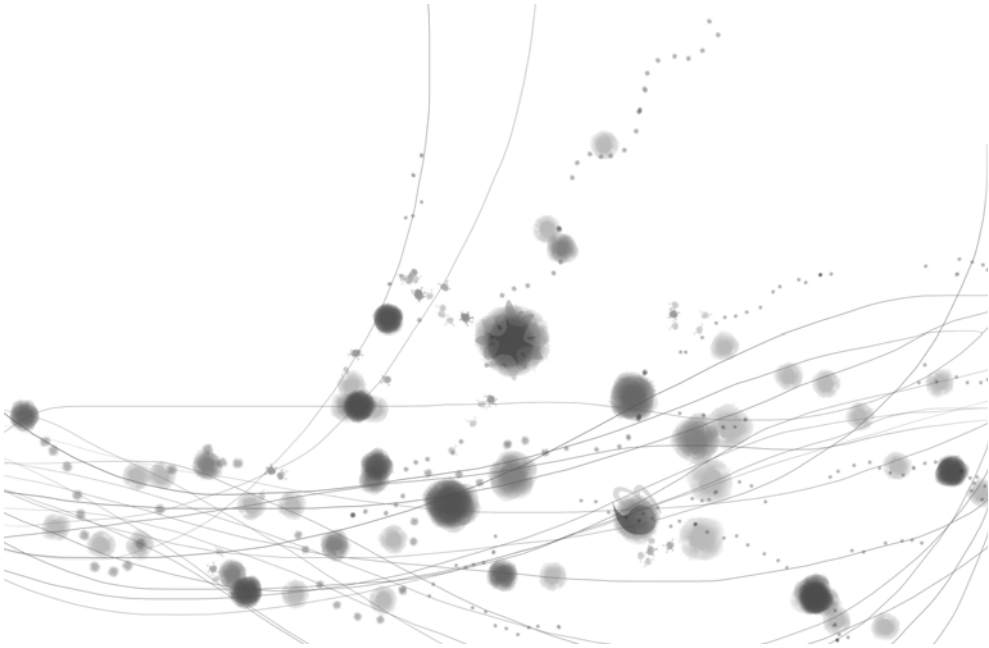
○ 스웨덴

- 일반예산에 대한 성평등 정책의 성주류화 분석으로서 성인지 예산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 전반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간 및 임금 등과 같은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
- 젠더이슈에 대한 불평등 현황을 광범위하게 분석
- 남성과 여성의 자원배분 문제를 거시적으로 분석
- 성평등 정책의 목표에 따른 예산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성예산으로서의 예산을 제시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이라는 단편적인 제도의 정착보다는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목표 추구를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사회의 성불평등 구조 개편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제 5 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종합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종합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에 사상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시범편성하였으며, 이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본질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젠더(gender) 즉, 남성과 여성이 갖게 되는 예산평등권에 대한 인식과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2010년부터 시행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후 2013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인해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았음. 지방재정법 개정 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까지는 1년 여 밖에는 준비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중앙보다 지방은 시작단계부터 어려운 여건이었음
- 특히,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규모는 크지만 사업내용은 복지나 농수산, 환경 등 기능이 단순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각 실과 부서별로 모두 포함되어 있어 분석해야 할 요인과 변수가 다양하여 중앙보다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경우 예산담당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담당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해당사업을 선별해 낸 후,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와 업무에 대한 이

해도가 필요하므로 교육, 연찬, 홍보가 매우 중요함

- 성인지 예산은 사업시행 결정 전 해당 사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되 남성에게 좀 더 필요할 사업이라면 남성관련 예산에, 여성에게 좀 더 필요할 사업이라면 여성관련 예산에 더 많이 편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 평등과 예산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 도입의 본래적 목적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편성 시범적용의 경우 성평등 목표설정이나 성인지 예산편성방향, 성별영향평가, 성별수혜분석 등에서 현행 예산사업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로 성인지 예산 편성으로 인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성인지 예산의 목표나 예산편성방향,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설정 등에서 예산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인력 활용 확대나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무리하게 이들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모든 초점을 여성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 성인지 예산이 자칫 ‘여성예산’, ‘여성 인지 예산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측면이 강함
- 따라서 구체성 없이 막연하게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지역의 성별통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근거하여 실제로 성별 격차가 왜 발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사업 설명서를 살펴보면 성별수혜분석(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배분)의 산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사유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대부분 구체성이 부족

- 하고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기술되고 있음
-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별수혜분석이나 사업분석을 위한 성별 기초통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음. 예컨대 성별수혜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별 대상자 통계가 없으므로 그 수혜자에 대한 통계 산출이 어렵고 예산편성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됨
 - 따라서 무엇보다도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인프라로서 지방의 성별 기초통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합리적 선정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첫 단추는 성인지 예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면서 지역단위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시험적용결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그것이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제시되기보다 제도 위주의 편의적 접근에 의해 선정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에서 원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대상(모집단)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양성을 평등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음. 즉, 지역여건과 성별 진입장애, 선호 문제 등에 의해 원천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여성의 비율/수혜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특히, 객관적인 원리/원칙과 왜 특정 사업이 지역에서 성인지 예산사

업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논거나 통계자료 제시 없이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거나 나열하는 경우가 발견됨

- 사회구조상 특정 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성 불평등(재정혜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한 부적합 사례로서 다음의 사업을 들 수 있음
 - 태양광 소재 제조 기초인력 양성사업
 - 풍력터빈 및 해상구조물 인력양성사업
 - 보육시설 복지향상 등 다수
 -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존 공무원 구성의 구조 문제)
- 성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지역사업
 - 법제 및 소송관리
 - 도서관 운영
 - 도로명 주소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므로 향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에 대해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의 초기부터 성인지 예산의 편성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하려는 정책적 접근보다는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자칫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초기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운영결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 후, 전국 확산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실천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편성방향 설정

- 성 평등 목표의 경우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부서에서는 성평등 목표로 간주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평등 목표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사업과 어떤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 설정이 불분명함
-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과 연계되는 성평등 목표를 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이해를 갖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임
 - 실/국/과에서 제시하는 성평등 목표 중 대다수가 모호하거나 부적합(성인지 예산 목표와 거의 무관함)한 사례가 발견됨
 - 성평등 목표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례

<교육법무과>

-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를 제공
-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맞춤 인재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전북 인재육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도민 참여의식 조성
- 제도적인 기반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인재육성 연계

- 성평등 목표가 모호한 사례

<건설교통국>

- SOC 확충과 대중교통시설 개선으로 취약계층 및 여성의 편의 증진
 - * 성인지 예산과 관련성이 없음

<도로공항공과>

- 보행 위주의 이동생활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성별간 차별성 최소화
 - * 취약계층을 여성과 직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임

- 2012년도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의 편성방향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견됨
 - 성인지 예산의 기초와 무관한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체육진흥과>

- 읍면동 단위까지 전문체육인 지도활동을 위한 인건비 편성
- 폭넓은 지도활동을 위해 출장비를 실비로 책정, 경비부담 해소

<도로공항공과>

-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 주민환경
-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

- 따라서 제시된 성 평등 목표와 예산에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술하고,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성평등 목표 설정과 마찬가지로 여성 편향적 경향이 관측되고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치단체 전체의 예산편성기조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 예산기조와 본 예산편성 기조와의 연계/조화
 - 양성평등, 성별 수혜 평등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사업과의 연계 강화

3.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성별수혜와 성별격차 원인의 분석

-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의 경우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한 사업목적,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근거 없는 산출, 주먹구구식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의 사업들이 다수 발견됨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사유가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일반사업인데 막연히 여성 사회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기술한 사례
 - 사업수혜자가 사업대상자보다 많은 경우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사유와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각각 관련이 없는 경우
-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완전히 무관한 내용을 기술한 사례
 - 보육시설 복지향상 : “여성 유효인력 활용”
 -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 “소상공인, 창업희망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생활정보지, 현수막,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참가를 홍보하고 있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 시 불편 예상” 등 다수
- 한편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잘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국가 예방접종 실시
 - “남자와 여자의 예방접종 대상자 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44,366명이 더 많은데, 연령별 접종자수를 볼 경우 15세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예방접종자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가 16세 이상부터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월별 예방접종 대상자수는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많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에 예방접종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경향을 보임”
 -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무료 대상자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몰리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친화활동이 많은 여성 노인이 정보교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접종에 몰리면서 여자의 예방접종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의 경우 성별수혜분석이나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여서는 성인지 예산분석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각 지역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예산사업의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토대로 구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한 단순한 필요성이나 현황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성별 기초통계 등 객관적 논거, 통계,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성별수혜 및 성별격차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 현행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서는 조직부서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조화(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와 사업 단위별 예산할당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목표는 조직부서의 전략목표, 상위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고, 성과지표도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고려하면서 상호 연계 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함

⇒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결산서와 조화·연계되도록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경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동 사업의 실시를 통해 성취(달성)하고자 하는 실천가능한 목표를 제시
 - 성별 수혜현황 분석 후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근거를 기재
 - 설정된 중·장기적 목표와 연계성을 갖는 성과목표 기술
 - 성과목표치 설정(전년도 실적, 현년도, 다음연도 목표치)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무부서가 성취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관련 목표 내지 결과(목적, 목표, 성과, 결과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혜택: 수와 비율, 분포, 기술·지식 증가, 만족도 증가, 접근성 증가 등을 포함

- 성과목표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년도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와 연계성을 갖는 단년도 목표로 구조화 할 수 있음
 - 성과목표는 가능한 단일의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특성 상 복수의 성과목표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양성 평등 관점에서 가장 의미가 크고 중요한 대표 목표를 채택함
- 성과지표는 성인지 예산의 편성·집행 결과 나타나는 직접적 산출물 (output)로서 구체성, 객관성(측정 및 평가 가능성), 정보이용 가능성(통계·정보입수 가능성), 현실성, 적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발
- 산출물 지표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객관성 담보를 전제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함
 - 양적 지표 : 수(예: 참여자 수, 수혜자 수 등), 빈도(참여 빈도, 수혜 빈도), 비율, 비중, 분위(예: 하위 10% percentile 등)
 - 질적 지표 :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비계량적 판단기준으로 사회적 합리성·공감대 기준에 입각하여 설정함
 - (예시) 사회적으로 인정된 특정조건의 충족도, 만족도, 질적 평가 내지 견해 등
 - (예시) 여성화장실 개조예산이 편성된 다음 여성들이 만족하였는지를 측정(질적 지표), 반면에 여성의 화장실 대기시간 측정은 양적 지표임

5. 교육, 연찬, 홍보 등

- 성인지 예산 시범적용 결과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의 사업선정 사유, 성별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이 형식적으로 기술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예산편성방법에 대한

교육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성인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자치단체장, 관계부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변화나 교육 및 홍보가 선행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시 전체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사업담당자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 편성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연찬활동을 통한 지식습득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1.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매뉴얼, 2011.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2009.
-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기본접근과 주요 과제”, 양성행복 정책포럼 :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주최, 2011.
- 임성일·김성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추진방안”, 2011 추계지방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 임성일, “양성평등을 고려한 예산제도의 제정과 지자체 정책대응 방향”, 공공정책, 6월호, 201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해외의 성인지 예산 :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200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신두섭 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200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해외의 성인지 예산 :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2009.
-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2.
- Anna Jutterdal, Gender Equality Work - a challenge for municipalities and county councils, SALAR, 2008.
- Arbete och Kön,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compendium Hälsa, 2007.
- Budlender, D. and G. Hewitt, Engendering Budgets, Commonwealth Secretariat, 2003.
- CBMS, Gender Poverty - An Analysis of Gender Dimensions of Poverty in the

Philippines - Volume 1. Gender Scenario in the Philippines, 2003.

CBMS, Gender Poverty - An Analysis of Gender Dimensions of Poverty in the Philippines - Volume 2. Case Study: Barangay Salvacion, Puerto Princesa City, Palawan, 2004.

Celia Reyes and Evan Due, Fighting Poverty with Facts. 2009.

Diane Elson, Budgeting for Women's Rights, UNIFEM, 2006.

Elson, D., Budgeting for Women's Rights: Monitoring Government Budgets for Compliance with CEDAW, UNIFEM, 2006.

FJÁRMÁLARÁDUNEYTIÐ, RÍKISBÚSKAPURINN 2012-2015, 2011.

GOBIERNO DE ESPAÑA, INFORME DE IMPACTO POR RAZÓN DE GÉNERO DEL PROYECTO DE LEY DE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PARA 2009.

GOBIERNO DE ESPAÑA, INFORME DE IMPACTO DE GÉNERO DEL PROYECTO DE LEY DE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PARA 2010.

GOBIERNO DE ESPAÑA, BOLETÍN OFICIAL DEL ESTADO, 2011.

GOBIERNO DE ESPAÑA, INFORME DE IMPACTO DE GÉNERO DEL PROYECTO DE LEY DE PRESUPUESTOS.

Ingólfur V. Gíslason, Fostering Caring Masculinities - Icelandic National Report, Jafnsréttsstofa, 2006.

Junta De Andalucia, Gender Impact Evaluation Report from the Draft Budget For the Autonomous Region of Andalusia for 2008.

_____, G+ PROJECT, 2010.

_____, INFORME DE EVALUACIÓN DE IMPACTO DE GÉNERO DEL PRESUPUESTO DE LA COMUNIDAD AUTÓNOMA DE ANDALUCÍA PARA 2012, 2011.

Margarta Ozonas, The Gender Responsive Budgeting Capacity Index: Methodology for Assessing and Monitoring GRB capacity in Public Institutions, 2011.

MENA-SBO, Gender Budgeting in Spain, 2010.

Nallari, R. and B. Griffith, Gender and Macroeconomic Policy, World Bank, 2011.

OECD, "Women's Economic Empowerment," issue paper, 2011.

Oxfam, Bringing Budgets Alive: Participatory Budgeting in Practice, 2005.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 Magna Carta of Women -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2011.

Reyes, C. M. et. al.(ed.), Developing and Piloting a Gender-Responsive Community-Based Planning and Budgeting Tool for Local Governance, CBMS, 2009.

SALAR Active work for Gender Equality - a challenge for municipalities and county councils, 2009.

Sarraf, F., "Gender-Responsive Government Budgeting," IMF Working Paper 03/83, 2003.

Sharp, R. and Broomhill, R, Gender-Responsive Policies and Budgets, State of South Australia, 2006.

Sheila Q., Gender Budgeting: Practical Implementation Hand Book, Council of

Europe, 2009.

Stotsky, J., "Gender Budgeting," IMF Working Paper 06/232, 2006.

Stotsky, J., "Budgeting with Women in Mind," Finance and Development, 44(2), 2007.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SOU(2007:15). Gender Equality in Public Services.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SOU(2007:15). Gender Mainstreaming Manual.

Trude L. and Mari T., Fostering Caring Masculinities - The European Dimensio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06.

UNIFEM, Gender Budget Initiatives: Strategies, Concepts and Experiences, 2002.

_____, Implementing Policy commitments to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The theory of change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2010.

Yamini M., Breaking New Frontiers for Gender Responsive Budgeting - The Kerala Model, 2011.

Yolanda J. and Angela O'Hagan, Gender Budgeting, 2010.

市井礼奈外, 平成19・20年度KFAW報告書, 2008.

<http://www.sweden.gov.se/sb/d/4096>

<http://www.sweden.gov.se/content/1/c6/13/07/15/8a48ffb6.pdf>

<http://english.skl.se/>

<http://www.mp.gov.in/finance/genderbudget.pdf>

〈참고자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행정안전부, 2012)

I.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정부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한 자원배분을 제시함

● 성인지 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19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 이후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11년 현재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제53조의 2, <부칙>제2조,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63조의2, <부칙>제3조
- * 주요 조항별 세부내용은 【부록2】 참조

3.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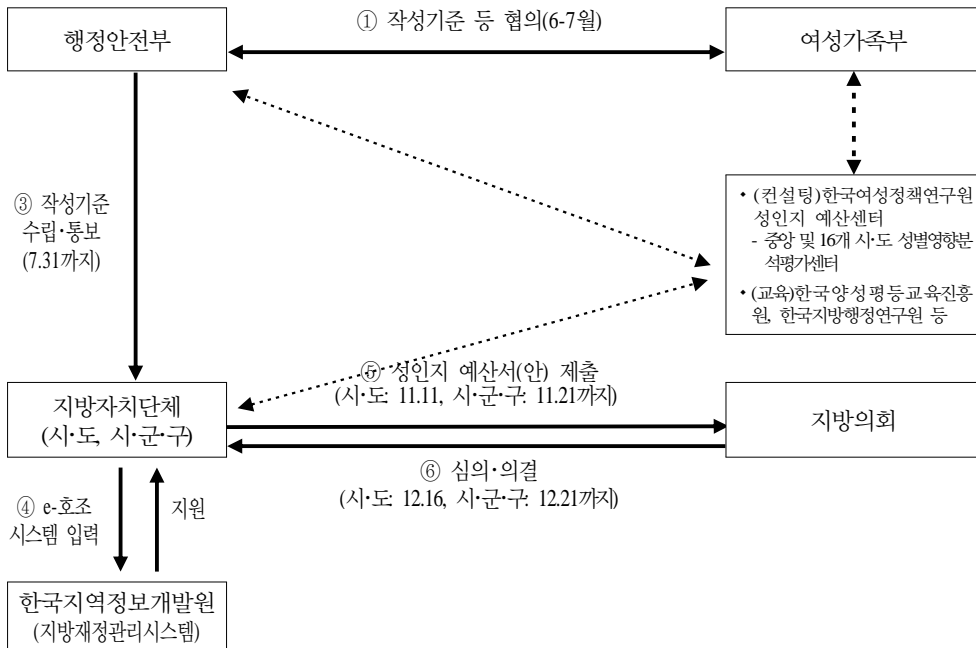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2011. 3. 8)
 -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근거조항 마련
 - ※ 국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첫 작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 (2011. 9. 6)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및 제출 (2012. 4~5)

II.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개요

1.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협의)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배포(『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각 지방자치단체) ·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 16개 시·도 성별 영향분석평가센터)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개별 사업부서)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성인지 예산서 제출·취합(해당 실·국 → 예산부서) (해당 실·국에서는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검토 및 확정(예산부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지방의회 제출 (201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 의회 제출)

2. 추진 체계



○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마련·통보 (행정안전부)

- 국가정책의 방향,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에 관한 기준 마련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 및 확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7.31까지)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도, 시·군·구)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확정 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과)예산안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성과)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동시에 심사·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 제출

3. 대상사업 선정기준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혹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
 - * 성별수혜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분	대상사업	비고
필수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최근 3년간(2009-20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 • 기타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권장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국고보조 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 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 최근 3년간(2009-20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실시한 사업 • 기타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대상사업 선정 예시

① 여성정책추진사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명 예시 (자치단체)	
I. 여성인력활용	여성인력활용 기반내실화	1. 청년여성층 진로지도 지원 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인프라 구축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여성능력개발교육운영, 경력단절 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진업주부 재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여성취업교실 운영,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새일여성인턴운영
	여성의 취업 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1. 비전통직종 여성 진출확대 2.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 3. 여성경제인 육성 4.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제고 5.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전문기능교육, 농촌여성전문인력화, 여성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전문기능교육,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일자리 확대	1. 성장동력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2. 기업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4. 여성기업 경영인프라 확충	여성기업 지원, 새일지원본부사업,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4. 가족친화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방과후 돌봄서비스(방과후 학교 교육 사업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출산축하금지원
II. 여성권의 보호	여성의 건강 보호	1. 여성의 건강 보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성건강증진사업
	대상별 여성복지육구 충족	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2. 한부모가족 지원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4. 미혼모 지원 5. 여성노인지원 6.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보호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지원,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싱글맘,싱글팍)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계보조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초중고)체험학습비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 문화체험행사 운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명 예시 (자치단체)	
II. 여성 권익 보호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 2.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 향상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여성장애인 우선고용 사업장 운영비 지원, 여성장애인 인·출산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제도 개선 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및 가정·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2.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추진 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4.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대책 5.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6.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 성매매피해 예방 및 피해자 자립지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 추진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지원 2.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사업,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다문화아동센터 운영, 다문화아동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정 기초영농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다문화아동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사업,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지역 사회적응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III.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성인지 정책의 시행	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성인지 정책 직원교육,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별영향평가 사업운영 및 교육,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성별통계 확립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2. 시민사회의 협력	여성정책 기반구축, 여성정책업무 추진 활동, 여성정책 개발육성,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역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역여성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평등문화 확산	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2. 양성평등 교육 확대 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제고 4. 여성 국제협력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의식 제고 자체사업, 양성평등 교육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분야	유형	유형 설명	사업명 예시 (자치단체)
일반공공 행정 (010)	교육훈련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정보화 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 훈련,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
	주민자치 및 참여	주민자치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열린 의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운영
공공질서 및 안전 (020)	교육훈련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소방교육지원, 재난안전 교육
	인력운영	공공질서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학교보안관계, 등하교길 도우미,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리더 육성
교육 (050)	교육훈련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양대학 운영
문화 및 관광 (060)	교육강좌 및 체험행사	교육강좌 및 체험행사를 지원하는 사업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교양강좌운영, 평생교육 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상·하반기 교양강좌 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문화행사 운영
	인력운영	문화 및 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숲해설가운영, 등산안내서비스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명예기자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환경보호 (070)	인력운영	환경보호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환경지킴이 운영,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민간환경감시단, 산림서비스인력 운영
사회복지 (080)	비용(자금) 지원	복지 대상자에게 비용(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수당,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관운영 지원	사회복지 관련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종합복지회관 운영,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운영, 부랑인시설, 노숙인시설 운영

분야	유형	유형 설명	사업명 예시 (자치단체)
사회복지 (080)	일자리	복지 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장애인행 정도우미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독거노인생활 지도사 파견
보건 (090)	비용(자금) 지원	보건 관련 복지 대상자에게 비용(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미숙아 및 선천적이상아 의료비 지원
	비용 외 지원	보건 관련 현물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대시중후군 관리, 중증장애인치과진료사업,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의치보철), 노인의치보철,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사업,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심뇌혈관관리, 금연클리닉, 자살예방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
	기관운영 지원	보건 관련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관리센터
농림해양수산 (100)	교육훈련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농기계교육훈련,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전문교육,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인대학 운영
	각종 지원	각종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 다목적인양기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
산업·중소기업 (110)	인력운영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취업사업,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육성,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사업, 풍력발전 고등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향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기업 및 산업 지원	기업 및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지원, 미래전략산업 운영지원
과학기술 (150)	교육훈련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과학멘토사업, 고등학생 산업연수프로그램 지원, 과학문화 확산 및 보급, 과학기술인지원센터, IT 인력양성사업

※ 블록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성별 분리통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명 예시에서 제외함

4. 작성항목 구성

- 각 지방자치단체는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 <Ⅲ>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Ⅳ>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Ⅴ>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1. 사업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를 작성

작성자	작성항목
자치단체 예산부서	I. 성평등 목표
	○ II.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III.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국	IV.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1.사업 총괄표 ○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성인지 예산서는 ‘e-호조시스템’ 에 입력
 - 사업(성과)예산안을 ‘e-호조시스템’ 에 입력 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표기(예산안에 동 내용 표시)
 - 사업(성과)예산안과 연계하여 ‘e-호조시스템’ 으로 작성 및 출력

Ⅲ.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방법

1. 자치단체 예산부서

① 작성 항목 및 방법

I. 성평등 목표

○

-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단체장의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1~3개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기술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작성

Ⅱ.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기술

-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Ⅲ.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② 작성사례

I. 성평등 목표

- 여성 취업률 제고
 -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및 지원
 -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여성 능력개발 기회 제공
- 여성의 건강보호 및 복지욕구 충족
 - 여성 특화적 보건프로그램 지원
 - 여성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 강화

II.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xx시 xx구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4개 사업의 2,94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8개(1,570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개(950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420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6개(1,820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 3개(540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 5개(580백만원)임

III.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 부록1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참조

2. 실·국

① 작성 항목 및 방법

IV.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 실·국

□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

※ 각 실·과에서 작성한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② 작성사례

IV. 실·국별 성인지 예산서

□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농림수산국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8개 사업의 1,43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4개(710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490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230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 7개(1,230백만원), 환경보호분야 사업 1개(200백만원)임

□ 총괄표

※ 부록1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 사업별 총괄표

※ 부록1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3. 실·과 (1. 사업총괄표)

① 작성 항목 및 방법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사업 총괄표

○ ○ 실·과

□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

※ 각 실·과에서 작성된 전체 사업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② 작성사례

Ⅶ.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여성청소년과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5개 사업의 500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청소년 문화체험 확대 및 이주여성 정착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분야 사업과 임신·출산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3개(280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130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90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3개(270백만원), 보건분야 사업 2개 (230백만원)임

□ 총괄표

※ 부록1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 사업별 총괄표

※ 부록1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참조

4. 실·과 (2. 사업별 설명자료)

① 작성 항목 및 방법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사업개요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재 가능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

※ 본 사업이 해당되는 칸에 “○” 표시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화장실, 보도블럭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사업수혜자의 성별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양식(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을 삭제하고 성별특성을 기술 가능

○ 사업대상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비율)	(%)	(%)	(%)
남성(비율)	(%)	(%)	(%)

※ 사업대상자

-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
- 통계청의 국가기초통계,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백서 및 지역 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해당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현황 제시
-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되는 대상자를 반드시 명시
-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의 값(명)과 같아야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사업수혜자

-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집단
- 2010년, 2011년, 2012년 현황을 제시하며, 2010년, 2011년은 해당연도의 집행 기준, 2012년은 2012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 표 하단의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지를 반드시 명시
-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계)의 값(명)과 같아야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예산구분

- 동사업의 총사업비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수혜자의 비율 등으로 예산을 배분
- 2010년, 2011년, 2012년 현황을 제시하며, 2010년, 2011년은 해당연도의 집행기준, 2012년은 2012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 단위는 ‘백만원(%)’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백만원(%))은 전체(계)의 값(백만원(%))과 같아야함. 단, 전체(계)의 ‘%’는 100%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게 작성

- (예)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 xx지역 통계연보의 xx구 독거노인수 일 때,
사업수혜자 : 돌보미 수(x) →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수(o)
- 사례4 참조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012년 값, 사업수혜자와 예산구분은 2012년 추정치만 기재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인 경우

-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단위는 여성 명(%)과 전체(계)의 값(명)만 기재. 여성 값(명)과 전체(계)의 값(명)은 동일.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남성의 값(명(%)) 미기재
- 사례1 참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상기의 성별 수혜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여성과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 및 여건,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사업유형별 작성 요령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

-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대책을 기술
- 사례1 참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대책을 기술
- 사례2 참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본 사업에서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여성수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기술
- 사례3 참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본 사업에서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대책을 기술
- 사례4 참조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사업의 목적,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등을 감안하여 기술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1년 실적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 ※ 사업(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계속사업의 경우 2011년 실적이 없으면 생략 가능
신규사업의 경우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만 기재
- ※ 사업유형별 작성요령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
 - 여성수혜율 이외에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목표 설정.
 - (예)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프로그램 만족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이수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서비스 만족도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여성수혜율 또는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목표 설정.
 - (예) ‘직장내 성희롱 대처능력 강화 교육’ → 여성 참여율
‘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 참여율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
 - (예) ‘농업전문인력양성’ → 여성농업인 수혜율
‘중소기업인력채용 지원’ → 중소기업 여성고용률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 남성수혜율을 높이기보다 사업의 목적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를 검토.
 - (예) ‘공공근로사업’ → 여성 참여율
‘암조기검진사업’ → 여성 검진율
‘노인돌봄서비스사업’ → 여성 노인 수혜율

② 작성사례

사례 1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
------	--------------------------

- ※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분석 여성 값만 기재,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대상자와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대책을 기술
- ※ 성과목표: 여성수혜율 이외에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목표 설정 (예)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교육이수율, 자격증 취득률 등

예시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6,045	6,077	6,080
여 성	6,045(100%)	6,077(100%)	6,080(100%)
남 성	-	-	-

※ 2010년, 2011년 행안부 주민등록 0세 인구수, 2012년 출생아수 추정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022	936	950
여 성	1,022(100%)	936(100%)	950(100%)
남 성	-	-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수혜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56	230	244
여 성	256(100%)	230(100%)	244(100%)
남 성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출산은 여성고유의 영역으로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이 차세대 건강을 좌우하므로 사회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함
- 고령임산부 및 여성의 경제 활동량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및 사전 예방적 서비스가 필요함
- 출산 여성의 건강증진은 출산장려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등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 지지기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의 건강 보호
 - 여성의 건강 보호 및 모성건강 증진
 -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 후 여성의 경제활동 보호 및 지원 강화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1년 실적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만족도	85점	87점	90점

*산출근거: 2011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2012, 2013년 설정치 상향 조정

사례 2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 ※ 성별 수혜분석: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대상자와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대책을 기술
- ※ 성과목표: 여성수혜율 또는 동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 설정
(예) 참가자 만족도, 교육이수율, 자격증 취득률 등

예시 : 여성농업인 육성(일반회계)

□ 사업개요

-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9,379	33,134	32,040
여 성	19,768(50.2%)	16,647(50.2%)	16,097(50.2%)
남 성	19,611(49.8%)	16,487(49.8%)	15,943(49.8%)

- ※ xx 지역 통계연보의 xx군 농업인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388	461	520
여 성	2,276(95.3%)	436(94.6%)	495(95.2%)
남 성	112(4.7%)	25(5.4%)	25(4.8%)

※ 참여 농업인 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5	19	19
여 성	43(95.3%)	18(94.6%)	18(95.2%)
남 성	2(4.7%)	1(5.4%)	1(4.8%)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위치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고, 그동안 남성위주의 편향적인 교육 혜택이 발생하여 여성 농업인의 교육 기회가 많지 않았음
- 이에 여성농업인의 의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본 사업이 여성농업인을 주 대상으로 추진됨
- 2011년 교육참여자 분석결과 50~60대가 68%, 30~40대는 32%로 젊은 여성 농업인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육아, 가사, 영농활동 등으로 인해 사업의 운영 시간대와 참여 여건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임. 따라서 젊은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제고를 위해 교육시간에 자녀돌봄서비스를 마련하고 교육시간대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성평등 기대효과

- 농업여성인 잠재역량 개발
 - 여성농업인의 농업전문 지식 및 기술 향상
 - 여성농업인 경력 개발 지원
-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30대 및 40대 여성농업인 일·가정 양립 지원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1년 실적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
여성농업인 참여율	94.6%	95.2%	95.2%

*산출근거: 2011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2012년 상향조정, 2013년은 2012년과 동 수준으로 유지

사례 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사업

- ※ 성별 수혜분석: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대상자와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본 사업에서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대책을 기술
- ※ 성과목표 : 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
(예) 여성수혜율, 여성참여율, 여성고용률 등

예시 : 농업 전문인력 양성(일반회계)

□ 사업개요

-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85,000	280,000	280,000
여 성	147,000(51.6%)	145,000(51.8%)	145,000(51.8%)
남 성	138,000(48.4%)	135,000(48.2%)	135,000(48.2%)

※ xx 지역 통계연보의 xx시 농업인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879	1,330	1,330
여 성	966(33.6%)	530(39.8%)	550(41.4%)
남 성	1,913(66.4%)	800(60.2%)	780(58.6%)

※ 교육대상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653	633	648
여 성	219(33.6%)	252(39.8%)	268(41.4%)
남 성	434(66.4%)	381(60.2%)	380(58.6%)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xx 지역의 농업종사 인구의 여성비율은 1970년 28%에서 2008년 54%로 지난 35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함
- 그러나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 교육프로그램은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남성농업인의 관심이 높은 영농 기술교육에 치우쳐 있음
-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여성농업인의 농업인단체 및 조직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쟁력 향상
 -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기회 확대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제적 활동 확대
- 농업교육의 다각화
 - 여성농업인에게 유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1년 실적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율	40%	43%	45%

*산출근거: 2011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2012년, 2013년 설정치 상향조정

사례 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사업대상자에 비해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

- ※ 성별 수혜분석: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대상자와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본 사업에서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대책을 기술
- ※ 성과목표 : 남성수혜율을 높이기보다 사업의 목적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여야하는 상황이 아닌지 검토 (예) 여성 참여율, 여성 수혜율, 참가자 만족도, 교육 이수율, 자격증 취득률 등

예시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일반회계)

□ 사업개요

-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11	1,737	1,887
여 성	1,166(77.2%)	1,309(75.4%)	1,415(75%)
남 성	345(22.8%)	428(24.6%)	472(25%)

※ XX지역 통계연보 XX구 독거노인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37	257	270
여 성	204(86.1%)	219(85.2%)	230(85.2%)
남 성	33(13.9%)	38(14.8%)	40(14.8%)

※ 수혜 받는 독거노인 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95	237	204
여 성	168(86%)	201(85%)	174(85%)
남 성	27(14%)	36(15%)	31(15%)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xx 지역 노인 인구수 중 여성 독거 노인수가 남성 독거 노인수의 3배 이상 많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자 또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의 수에 비해 훨씬 높음
- 질병 수, 고령화 정도, 질병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등에 있어 남성노인 보다 여성노인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차이에 따른 돌봄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함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적 보호
 -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여성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1년 실적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
여성 노인 수혜자비율	85%	85%	85%

*산출근거: 2011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2012년, 2013년 동 수준으로 유지

사례 5

인프라성 사업

- ※ 인프라성 사업이란 센터, 시설,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중에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 성별분리 통계가 존재하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 해당(예: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별 분리통계 산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 (예: 공중화장실, (체육)공원, 개천정비, 생태하천 복원, 공영주차장 운영, 도서관 건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방범용 CCTV,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도로정비, 환경개선 등)
- ※ 사업대상자: 해당 센터, 시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
- ※ 사업수혜자: 해당 센터, 시설, 기관을 실제로 이용한 사람
- ※ 성별 수혜분석: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각각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 사업자와 실제 수혜자를 반드시 명시. 여성 이용자가 100%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분석에서 여성 값만 기재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별 수혜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하고,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대책을 기술
- ※ 성과목표: 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작성

예시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일반회계)(여성정책추진사업)

- 사업개요
 -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5,423	154,762	154,000
여 성	155,423(100%)	154,762(100%)	154,000(100%)
남 성	-(%)	-(%)	-(%)

○ 사업수혜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828	2,593	2,500
여 성	3,828(100%)	2,593(100%)	2,500(100%)
남 성	-(%)	-(%)	-(%)

※ xx시 폭력피해 상담 여성 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34	245	261
여 성	234(100%)	245(100%)	261(100%)
남 성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여성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음
- 가정폭력 발생률에 비해 실제 폭력피해 여성들의 서비스 활용도나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임
- 따라서 폭력피해 여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함
- 여성·아동지역연대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필요함

□ 성평등 기대효과

- 폭력피해 여성의 인권보호
 - 상담, 일시보호 등의 지원
 -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제공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가정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1년 실적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
가정폭력 재발 감소율	5%	6%	7%

* 산출근거 : 2011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2012년, 2013년 상향 조정

예시 :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일반회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사업개요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32,279	139,261	141,188
여 성	53,487(40.5%)	56,841(40.8%)	57,765(40.9%)
남 성	78,692(59.5%)	82,420(59.2%)	83,423(59.1%)

※ xx시 통계연보, xx시 장애인 인구

○ 사업수혜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37	609	593
여 성	206(38.4%)	218(35.8%)	207(34.9%)
남 성	331(61.6%)	391(64.2%)	386(65.1%)

※ 장애인 복지시설 남녀 이용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699	17,366	17,366
여 성	6,022(38.4%)	6,216(35.8%)	6,062(34.9%)
남 성	9,677(61.6%)	11,149(64.2%)	11,304(65.1%)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여성장애인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고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욕구 충족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여성장애인에게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기회 제공이 필요함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 권익 강화
 -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 여성장애인에게 유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1년 실적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
여성장애인 이용율	36%	37%	39%

* 산출근거 : 2011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2012년, 2013년 상향 조정

【부록1】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2013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의 2
-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2013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I 성평등 목표

-
-

II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

III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계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010 일반공공행정			%		%		%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		%
014 재정·금융			%		%		%
016 일반행정			%		%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		%		%
023 경찰			%		%		%
025 재난방재·민방위			%		%		%
050 교육			%		%		%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052 고등교육			%		%		%
053 평생·직업교육			%		%		%
060 문화 및 관광			%		%		%
061 문화예술			%		%		%
062 관광			%		%		%
063 체육			%		%		%
064 문화재			%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		%
070 환경보호			%		%		%
071 상하수도·수질			%		%		%
072 폐기물			%		%		%
073 대기			%		%		%
074 자연			%		%		%
075 해양			%		%		%
076 환경보호일반			%		%		%
080 사회복지			%		%		%
081 기초생활보장			%		%		%
082 취약계층지원			%		%		%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		%
085 노인·청소년			%		%		%
086 노동			%		%		%
087 보훈			%		%		%
088 주택			%		%		%
089 사회복지일반			%		%		%

분야 · 부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		%		%
091 보건의료			%		%		%
093 식품의약품안전			%		%		%
100 농림해양수산			%		%		%
101 농업·농촌			%		%		%
102 임업·산촌			%		%		%
103 해양수산·어촌			%		%		%
110 산업·중소기업			%		%		%
111 산업금융지원			%		%		%
112 산업기술지원			%		%		%
113 무역 및 투자유지			%		%		%
114 산업진흥·고도화			%		%		%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		%		%
120 수송 및 교통			%		%		%
121 도로			%		%		%
123 도시철도			%		%		%
124 해운·항만			%		%		%
125 항공·공항			%		%		%
126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		%		%
140 국토 및 지역개발			%		%		%
141 수자원			%		%		%
142 지역 및 도시			%		%		%
143 산업단지			%		%		%
150 과학기술			%		%		%
151 기술개발			%		%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		%		%
153 과학기술일반			%		%		%
160 예비비			%		%		%
161 예비비			%		%		%
900 기타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		%		%
본 청			%		%		%
공 보 관 실			%		%		%
○ ○ 실			%		%		%
○ ○ 담당 관 실			%		%		%
○ ○ 국			%		%		%
○ ○ 과			%		%		%
직 속 기 관			%		%		%
○ ○ 처 (원)			%		%		%
○ ○ 과			%		%		%
사 업 소			%		%		%
○ ○ 사 업 소			%		%		%
○ ○ 사 업 소			%		%		%
읍 · 면 · 동			%		%		%
○ ○ 읍 면 동			%		%		%
○ ○ 읍 면 동			%		%		%
외 청			%		%		%
○ ○ 실 과			%		%		%

IV 실 · 국별 성인지 예산서

○○○ 실·국

□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V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 실·과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계	개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개				
여성정책추진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기타	소 계	개			%
	일반회계	개			%
	기타특별회계	개			%

2.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광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자치단체부담금				%
기타				%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비율)	(%)	(%)	(%)
남성(비율)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성평등 기대효과

○

-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1년 실적	2012년 추정치	2013년 목표치

* 산출근거:

[부록2] 지방재정법 및 관련 시행령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부칙> <법률 제10439호, 2011.3.8>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1.9.6]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1.9.6]

<부칙>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9.6>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